

**2022 년도 취학 또는 진학 ·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제도 일람**

교 토 부

교 토 부 교 육 위 원 회

목 차

머리말.....	1
교토부원호제도담당기관일람.....	2
시정촌·시정(조합)교육위원회 일람.....	3
복지사무소 일람.....	4
사회복지협의회(상담창구)일람.....	5
 제 1 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6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7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8
셋째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보조금【면제(보조)】.....	9
취학장려비【지급】.....	10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1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12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13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14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15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16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17
취학원조비【지급】.....	18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 【지급】.....	19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 【지급】.....	20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학교에 지급】.....	21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22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23
 제 4 편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24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25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26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27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28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29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지급】.....	30
취학원조비【지급】.....	31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지급】	32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지급】	33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학교에 지급】	34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35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36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37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38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39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	42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금」【무이자대출】	43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무이자대출】	45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46
고등학생등 수학 지원사업(수학준비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48

제 7 편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50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보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51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52
장학을 위한 급부금(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지급】	55
모자가정장학금등【지급】	57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지급】	58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지급】	60
고등학교 학생통학비 보조금【지급】	62
정시제 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 과정 교과서·학습서 보조금	64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무이자대출】	65
공립고교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66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68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사업【수업료감면·학비경감】	69
효고현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71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72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교육지원비)」【무이자대출】	73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무이자대출】	74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무이자대출】	75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7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준비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78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80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여】	81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83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85
생활보호법에 의한「진학준비급부금」【지급】.....	86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	87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88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90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여】.....	91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93
 제 9 편 중학교·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포함)등, 졸업후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95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기능습득비)」【지급】.....	96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취업준비비)」【지급】.....	97
기능습득자금·입소준비금【지급】.....	98
훈련수당·입교준비금【지급】.....	99
장애인등 직장적응훈련수당【지급】.....	100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무이자대출】.....	101
간호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	102
개호 복지사 등 복지자금【무이자대출】.....	104
보육사 수학자금【무이자대출】.....	105
 참고자료	106
아동 수당【지급】.....	107
아동 부양 수당【지급】.....	109
특별 아동 부양 수당【지급】.....	110
장애아 복지 수당【지급】.....	111
모자복지단체 소액 대출자금【무이자대출】.....	112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급부금【지급】.....	113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자금대출【무이자대출】.....	114
 각제도 교토부청 담당과	115

머리말

인권존중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현재, 교토부에서도 동화문제 등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야 합니다.

교토부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학, 기능취득이나 취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각종의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국헌법 제 97 조에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획득을 향한 노력의 성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망하는 분은 보호자나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의 장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것과 함께,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이 책자에 게재되어 있는 제도 외에, 시정촌(市町村)에서 독자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거주지역 시정촌(市町村)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장학사업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에서 [조건]이나 [대학명, 단체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jasso.go.jp/shogakukin/dantaiseido/index.html>

- 각각의 제도내용은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내용에 관해 문의처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토시는 정령지정도시로써 독자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토시 각 관계기관 또는 「교토 이츠데모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 이츠데모 콜센터 TEL 075-661-3755 연중무휴 아침 8 시 ~ 저녁 9 시까지)

교토부 원호제도 담당기관 일람

□교토부청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과	전화번호
교육청지도부 학교교육과	075-414-5831	상공노동관광부 고용추진실	075-682-8918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건강복지부 의료과	075-414-4746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58 075-414-4564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부민환경부 안심·안전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상공노동관광부 인재육성과	075-414-5101	교육청지도부 인권교육실	075-414-5822

□지방기관

광역진흥국	보건소	소관 시정촌	교육국
야마시로(山城) 광역진흥국 0774-21-2101	오토쿠니(乙訓)보건소 075-933-1151	무코우시	오토쿠니(乙訓) 교육국 075-933-5130
		나가오카쿄시	
		오오야마자키쵸	
	야마시로북(山城北)보건소 0774-21-2191	우지시※	야마시로(山城) 교육국 0774-62-0008
		조요시※	
		쿠미야마쵸※	
	야마시로북(山城北) 츠즈키(綴喜)지점 0774-63-5745	야와타시	
		교타나베시	
		이데쵸	
	야마시로남(山城南)보건소 0774-72-4300	우지타와라쵸	
		기즈가와시	
		카사기쵸	
		와즈카쵸	
		세리카쵸	
		미나미야마시로무라	
난탄(南丹) 광역진흥국 0771-22-0422	난탄(南丹)보건소 0771-62-4751	카메오카시	난탄(南丹)교육국 0771-62-0304
		난탄시	
		교탄바쵸	
츄탄(中丹) 광역진흥국 0773-62-2500	츄탄서(中丹西)보건소 0773-22-5744	후쿠치야마시	츄탄(中丹)교육국 0773-42-1200
	츄탄동(中丹東)보건소 0773-75-0805	아야베시	
		마이즈루시	
탄고(丹後) 광역진흥국 0772-62-4301	탄고(丹後)보건소 0772-62-0361	미야즈시	탄고(丹後)교육국 0772-22-2175
		교탄고시	
		요사노쵸	
		이네쵸	

※우지(宇治)시, 조요(城陽)시 및 구미야마쵸(久御山町)에 사는 분의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P.39~41, P.52~54) 및 기능 소득 자금, 입소준비금(P.98)의 담당보건소는 야마시로키타(山城北)보건소 쓰즈키(綴喜)분실입니다.

시정촌·시정(조합)교육위원회 일람

시정촌(시정,정·촌사무소)		시정(조합)교육위원회	
무코우 시청	075-931-1111	무코우시 교육위원회	075-931-1111 (시청대표전화)
나가오카고 시청	075-951-2121	나가오카고 교육위원회	075-951-2121 (시청대표전화)
오야마자키초 사무소	075-956-2101	오야마자키초 교육위원회	075-956-2101 (초사무소대표전화)
우지시청	0774-22-3141	우지시 교육위원회	0774-22-3141 (시청대표전화)
조요시청	0774-52-1111	조요시 교육위원회	0774-56-4003
야와타시청	075-983-1111	야와타시 교육위원회	075-983-1111 (시청대표전화)
교타나베시청	0774-63-1122	교타나베시 교육위원회	0774-62-9550
키즈가와시청	0774-72-0501	키즈가와시 교육위원회	0774-72-0501 (시청대표전화)
쿠미야마초 사무소	075-631-6111	쿠미야마초 교육위원회	075-631-9974
이데초사무소	0774-82-2001	이데초 교육위원회	0774-82-4333
우지타가라초 사무소	0774-88-2250	우지타가라초 교육위원회	0774-88-6612
세이카초 사무소	0774-94-2004	세이카초 교육위원회	0774-95-1906
카사기초 사무소	0743-95-2301	소라쿠토부광역연합 교육위원회	0774-78-4335
와츠카초 사무소	0774-78-3001		
미나미야마시로무라 사무소	0743-93-0104		
카메오카시청	0771-22-3131	카메오카시 교육위원회	0771-22-3131 (시청대표전화)
난탄시청	0771-68-0001	난탄시 교육위원회	0771-68-0055
교탄바초사무소	0771-82-0200	교탄바초 교육위원회	0771-84-0028
오야베시청	0773-42-3280	오야베시 교육위원회	0773-42-3280 (시청대표전화)
후쿠치야마시청	0773-22-6111	후쿠치야마시 교육위원회	0773-22-6111 (시청대표전화)
마이즈루시청	0773-62-2300	마이즈루시 교육위원회	0773-66-1072
미야즈시청	0772-22-2121	미야즈시 교육위원회	0772-45-1641
교탄고시청	0772-69-0001	교탄고시 교육위원회	0772-69-0620
이네초사무소	0772-32-0501	이네초 교육위원회	0772-32-0718
요사노초사무소	0772-46-3001	요사노초 교육위원회	0772-43-9025
		요사노초 미야즈시 중학교연합교육위원회	0772-43-9025
교토시청	075-222-3111	교토시 교육위원회	075-222-3767

복지사무소 일람

사무소명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관시정촌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오토쿠니보건소)	617-0006	向日市上植野町馬立 8	075-933-1154	오야마자키초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야마시로북보건소즈즈키분실)	610-0331	京田辺市田辺明田 1	0774-63-5747	쿠미야마초 이데초 우지타와라초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야마시로남보건소)	619-0214	木津川市木津上戸 18-1	0774-72-0208	카사기초,와즈카초 세이카초,미나미야마시로무라
교토부 난탄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난탄보건소)	622-0041	南丹市園部町小山東町藤ノ木 21	0771-62-0363	교탄바초
교토부 탄고광역진흥국 (보건복지부 탄고보건소)	627-8570	京丹後市峰山町丹波中嶋 855	0772-62-4302	요사노초 이네초
후쿠치야마시 복지사무소	620-8501	福知山市宇内記 13 の 1	0773-24-7012	후쿠치야마시
마이즈루시 복지사무소	625-8555	舞鶴市宇北吸 1044	0773-66-1010	마이즈루시
마이즈루시 복지사무소 (마이즈루시청 서지점)	624-0853	舞鶴市宇南田辺 1	0773-77-2253	
아야베시 복지사무소	623-8501	綾部市若竹町 8 の 1	0773-42-4257	아야베시
우지시 복지사무소	611-8501	宇治市宇治琵琶 33	0774-22-3141	우지시
미야즈시 복지사무소	626-8501	宮津市浜町 3012	0772-45-1623	미야즈시
카메오카시 복지사무소	621-8501	亀岡市安町野々神 8	0771-25-5030	카메오카시
조요시 복지사무소	610-0195	城陽市寺田東ノ口 16・17	0774-56-4034	조요시
무코우시 복지사무소	617-8665	向日市寺戸町中野 20	075-931-1111	무코우시
나가오카교시 복지사무소	617-8501	長岡京市開田 1 丁目 1 の 1	075-955-9517	나가오카교시
야와타시 복지사무소	614-8093	八幡市八幡三本橋 59 の 9	075-983-1457	야와타시
교타나베시 복지사무소	610-0393	京田辺市田辺 80	0774-64-1371	교타나베시
교탄고시 복지사무소	627-0012	京丹後市峰山町杉谷 691	0772-69-0310	교탄고시
난탄시 복지사무소	622-8651	南丹市園部町小桜町 47	0771-68-0007	난탄시
키즈가와시 복지사무소	619-0286	木津川市木津南垣外 110 の 9	0774-79-0307	키즈가와시
키타 복지사무소	603-8511	京都市北区紫野東御所田町 33 - 1	075-432-1181 (대표전화)	키타구
가미교 복지사무소	602-8511	京都市上京区今出川通室町西入堀出 シ町 285	075-441-0111 (대표전화)	가미교구
사쿄 복지사무소	606-8511	京都市左京区松ヶ崎堂ノ上町 7 の 2	075-702-1000 (대표전화)	사쿄구
나카교 복지사무소	604-8588	京都市中京区西堀川通御池下る西三 坊堀川町 521	075-812-0061 (대표전화)	나카교구
히가시아마 복지사무소	605-0862	京都市東山区清水五丁目 130 の 8	075-561-1191 (대표전화)	히가시아마구
야마시나 복지사무소	607-8511	京都市山科区柳辻池尻町 14 の 2	075-592-3050 (대표전화)	야마시나구
시모교 복지사무소	600-8588	京都市下京区西洞院通塩小路 upper 東 塩小路町 608 の 8	075-371-7101 (대표전화)	시모교구
미나미 복지사무소	601-8511	京都市南区西九条南田町 1 の 3	075-681-3111 (대표전화)	미나미구
우쿄 복지사무소	616-8511	京都市右京区太秦下刑部町 12	075-861-1101 (대표전화)	우쿄구
니시쿄 복지사무소	615-8522	京都市西京区上桂森下町 25 の 1	075-381-7121 (대표전화)	니시쿄구
라쿠사이 복지사무소	610-1143	京都市西京区大原野東境谷町二丁目 1 の 2	075-332-8111 (대표전화)	니시쿄구
후시미 복지사무소	612-8511	京都市伏見区鷹匠町 39 の 2	075-611-1101 (대표전화)	후시미구
후카쿠사 복지사무소	612-0861	京都市伏見区深草向畑町 93 の 1	075-642-3101 (대표전화)	후시미구
다이고 복지사무소	601-1366	京都市伏見区醍醐大構町 28	075-571-0003 (대표전화)	후시미구

사회복지협의회(상담창구)일람

사협명	우편번호	사협소재지	전화번호
키타구	603-8143	北区小山上総町 3	075-441-1900
가미교구	602-8511	上京区今出川通室町西入堀出シ町 285 上京区総合庁舎 2F	075-432-9535
사쿄구	606-8103	左京区高野西開町 5 京都市左京合同福祉センター内	075-723-5666
나카교구	604-8316	中京区大宮通御池下ル三坊大宮町 121-2 中京区地域福祉センター内	075-822-1011
히가시야마구	605-0863	東山区五条通大和大路東入ル 5 丁目梅林町 576-5 「やすらぎ・ふれあい館」内	075-551-4849
야마시나구	607-8344	山科区西野大手先町 2-1 京都市山科総合福祉会館内	075-593-1294
시모교구	600-8166	下京区花屋町通室町西入ル乾町 292 京都市下京総合福祉センター内	075-361-1881
미나미구	601-8321	南区吉祥院西定成町 32 京都市南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5-671-0709
우쿄구	616-8511	右京区太秦下刑部町 12 右京区総合庁舎 5F	075-865-1150
니시쿄구	615-8083	西京区樫原百々ヶ池 31-18 西京ふれあい地域福祉センター内	075-394-5711
후시미구	612-8318	伏見区紙子屋町 544 京都市伏見社会福祉総合センター内	075-604-6541
후시미구・다이교지점	601-1375	伏見区醍醐高畑町 30-1 パセオダイゴロー西館 京都市醍醐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5-575-2070
후쿠치야마시	620-0035	福知山市宇内記 10 番地の 18 福知山市総合福祉会館内	0773-25-3211
마이즈루시	625-0087	舞鶴市宇余部下 1167 舞鶴市中総合会館内	0773-62-7044
아야베시	623-0012	綾部市川糸町南古屋敷 5-1 綾部市福祉ホール内	0773-43-2881
우지시	611-0021	宇治市宇治琵琶 45 宇治市総合福祉会館内	0774-22-5650
미야즈시	626-0041	宮津市鶴賀 2109 番地の 2 宮津市地域ささえあいセンター	0772-22-2090
카메오카시	621-0806	亀岡市余部町樋又 61-1 ガレリアかめおかふれあいプラザ内	0771-23-6711
조요시	610-0121	城陽市寺田東ノ口 17 城陽市立福祉センター内	0774-56-0909
무코우시	617-0002	向日市寺戸町西野辺 1-7 向日市福祉会館内	075-932-1961
나가오카교시	617-0833	長岡京市神足 2 丁目 3 番 1 号 長岡京市総合生活支援センター	075-958-6912
야와타시	614-8022	八幡市八幡東浦 5 番地	075-983-4450
쿄타나베시	610-0332	京田辺市興戸犬伏 5-8 京田辺市社会福祉センター内	0774-62-2222
쿄탄고시	627-0111	京丹後市弥栄町溝谷 3464 京丹後市弥栄庁舎内	0772-65-2100
난탄시	629-0301	南丹市日吉町保野田垣ノ内 11 番地	0771-72-3220
키즈가와시	619-0214	木津川市木津川端 19 木津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74-71-9559
오야마자키초	618-0091	大山崎町字円明寺百々10-2 福祉センター「なごみの郷」内	075-957-4100
쿠미야마초	613-0043	久御山町大字島田ミスノ 11 地域福祉センター「さつき苑」内	075-631-0022
이데초	610-0302	井手町大字井手小字東前田 23 番地 老人福祉センター「玉泉苑」内	0774-82-3499
우지타와라초	610-0252	宇治田原町大字荒木小字天皇 2 老人福祉センター「やすらぎ荘」内	0774-88-3294
카사기초	619-1303	笠置町大字笠置小字西通 90-1 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43-95-2750
와즈카초	619-1212	和束町大字釜塚小字生水 15 社会福祉センター内	0774-78-3312
세이카초	619-0243	精華町大字南稲八妻小字砂留 22-1 地域福祉センター「かしのき苑」内	0774-94-4573
미나미야마시로무라	619-1411	南山城村大字北大河原小字大稲葉 4 南山城村保健福祉センター内	0743-93-1201
쿄탄바초	622-0213	京丹波町須知鍋倉 1 番地 1 京丹波町健康管理センター内	0771-82-0126
이네초	626-0413	伊根町字泊 1 伊根町老人福祉センター「泊泉苑」内	0772-32-0176
요사노초	629-2311	与謝野町字幾地 908 野田川老人憩の家内	0772-43-0294
교토시	600-8127	下京区西木屋町通上ノ口上ル梅湊町 83-1 「ひと・まち交流館京都」内	075-354-8734
교토부	604-0874	中京区竹屋町通烏丸東入ル清水町 375 ハートピア京都 5 F	075-252-6293

제 1 편 영 · 유아를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내 용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아동의 부양을 하고 있을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P.8)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아동 1 인에 대해 연액 11,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이 있었을 시, 또는 년도중도에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는 월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의 4 월 1 일 현재,지급대상자	4 ~ 5 월	4 ~ 3 月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의 4 월 2 일 이후,지급대상자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 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내 용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 ※모자가정장학금 (P.7) 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아동 1 인에 대해 연액 11,000 엔 (6 월 1 일 이후에 신청하거나 혹은 연도 도중에 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월할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4 월 ~ 5 월말일 이후는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신청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①,②의 증명을 발급받은 후 , 부(府)광역진흥국 또는,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또는 교통사고증명서(사본)의 첨부가 있는 경우는 불요합니다.) ②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부민(府民) 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로 문의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후 보육료 등 무상화 사업 보조금【면제(보조)】

내 용	보육소, 유치원 등에 입소, 입원하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와 부식비를 면제(보조)합니다. ※부(府)가 보호자 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이후의 유치원, 보육원 등의 보육료와 부식비 면제를 시행하는 시정촌(市町村)에 보육료 면제액의 1/2, 부식비면제액의 1/4 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다음 ①,②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분 ① 만 18 세 미만의 자녀(단, 18 세가 되는 날 이후 첫 해 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를 3 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고, 셋째 이후 자녀를 보육소, 유치원 등에 입소, 입원시키고 있는 분 ② 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 ※보육료 면제에 대해서는 3 호 인정(2 호 인정인 분은 만 3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의 3 월 31 일까지 보육료 면제), 부식비 면제에 대해서는 2 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따라서는 위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촌(市町村)에 문위해 주십시오.
면제액	보육료: 전액 부식비: 1 인당 월액 4,500 엔까지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거주 시정촌(市町村)(P.3)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취학장려비【지급】

내 용	특별지원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유치부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지급액	구 분 ※			I	Ⅱ	Ⅲ
	학교급식비			실비	실비의 1/2	-
	교 통 비	통학비	본인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귀성비 39 왕복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교류 및 공동학습비			실비	실비
	기숙사 거주에 따 른 경비	침구구입비		5,510 엔	2,755 엔	-
		일용품등구입비		141,560 엔	70,780 엔	-
		식비		156,210 엔	78,105 엔	-
	수학 여행 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본인 경비	1,600 엔	800 엔	-
			보조인 경비	2,390 엔	1,195 엔	-
	학용품등 구입비			8,680 엔	4,340 엔	-
○대상이 되는 경비와 보조한도액 ※ 표 안의 구분 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 육과 (Tel075-414-5834) 로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금액은 2022 년도 기준입니다.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 (일시부조) 」【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가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초등부를 포함. 이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함.)에 입학할 때 필요한 비용(학생복, 가방, 신발 등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 다음 해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생활부조 (일시부조) 」			
	구 분	내 용	지급액	
	입학준비금	입학시의 학생복, 란도세루, 가방, 신발 등	64,300 엔 이내	
	【참고】입학준비금 외에 생활보호법의「교육부조」(P.18) 로써 아래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준액	【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서도도구,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	【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등의 구입비	월액 2,600 엔
	학급비등	학급비, 아동회비, PTA 회비 등		월액 1,100 엔 이내
	교재비	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실비지급
	학교급식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실비지급
	교외활동참가비	숙박비,시설이용료,교통비 등		실비지급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		실비지급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		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16,000 엔 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20) 지급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 에 입학했을 때에 필요한 의복, 신발등의 구입비용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 해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에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대출액	아동 1 인 당 64,300 엔 이내
신청시기	입학전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차용서 제출이 확인 된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상담 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⑦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 보건소에 제출 해 주십시오. ① 취학통지서 및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③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④ 인감등록증명서 ⑤ 부양 사실에 관한 증명서 ⑥ 소득증명서류 ⑦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내 용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 초등학생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P.16)등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아동 1 인당 연액 21,5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 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table><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table>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P.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내 용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 ※모자가정장학금 (P.15) 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아동 1 인 당 연액 21,5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지급 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 해 주십시오. ①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증명서 (사본) 의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②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 · 통학용품의 구입비, 학교급식비 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초등학생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		
지급액	○생활보호법「교육부조」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준액	【학용품비】연필, 노트, 지우개, 서도도구, 바느질 도구, 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	【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 통학용신발, 실내화, 모자 등 통학용품 등의 구입비
	학급비 등	학급비, 아동회비, PTA 회비 등	월액 2,600 엔
	교재비	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 일명사전, 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월액 1,080 엔 이내
	학교급식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실비지급
	교외활동참가비	숙박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	실비지급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	실비지급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	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16,000 엔 이내)
	○생활보호법「생활부조 (일시부조) 」		
	구 분	내 용	지급액
	피복비	제 4 학년 진급시 교복비등	14,200 엔 이내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18) 수학여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원조금 (P.22)			로 각각 신청 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20)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구분에 의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년 4월 1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원조비【지급】

내 용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초등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비등 일부를 원조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 생활보호 수급을 받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급액	※지급항목,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요보호자 수학여행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P.17) 급부 이외의 것) 2 준요보호자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통학비, 수학여행비, 의료비, 학교급식비, 등 주 : 의료비 . . . 학교보건안전법 시행령 제 8 조가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신청시기	연초 (연도중의 경우는 수시) 시정촌(市町村)및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거주 지역의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지급】

내 용	초등학교 특별지원학급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 해당하는 아동 또는 특별지원학급에 취학하는 아동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교육부조」(P.17)、취학원조비(P.18)를 수급하는 경우는 일부 경비만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아래의 지급액은 국가가 정한 단가 (2022 년도 기준) 이며, 지급항목 및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	I	Ⅱ	Ⅲ
	학교급식비	실비의 1 / 2	실비의 1 / 2	-
	통학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교류 및 공동학습교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수학여행비	10,790 엔	10,790 엔	-
	숙박을 포함하지 않는 교외활동등 참가비	800 엔	800 엔	-
	숙박을 포함하는 교외활동등 참가비	1,845 엔	1,845 엔	-
	학용품등 구입비	5,820 엔	5,820 엔	-
	신입학아동 학용품비 등	25,555 엔	25,555 엔	-
	체육실기용구비 (스키 등)	13,255 엔	13,255 엔	-
	확대 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 (한권당 한도 5,250 엔)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 (한권당 한도 5,250 엔)	-
	온라인 학습 통신비	7,000 엔	-	-
	※ 표 구분 I,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시기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내 용	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소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					
지급액	○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1			I	II	III
	학교급식비			실비	실비의 1 / 2	-
	교 통 비	통학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1 ~ 3 학년 실비 4 ~ 6 학년※2 실비		
		귀성비 39 왕복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교류 및 공동학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 / 2
	기숙사 거주에 의 한 경비		침구구입비	5,510 엔	2,755 엔	-
			일용품등 구입비	141,560 엔	70,780 엔	-
			식비	148,850 엔	74,425 엔	-
	수 학 여 행 비	수학여행비	본인 경비	21,580 엔	10,790 엔	-
			보조인 경비 ※3	33,730 엔	16,865 엔	-
		교외활동등 참가비	본인 경비	18,580 엔	9,290 엔	-
			보조인 경비	1 ~ 3 학년 27,870 엔 4 ~ 6 학년※2 27,870 엔	1 ~ 3 학년 13,935 엔 4 ~ 6 학년※2 13,935 엔	-
	학용품 등 구입비			11,640 엔	5,820 엔	-
	확대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 산정 한 액			한 권당 한도 10,500 엔	I 의 1 / 2	-
	신입학아동 · 생도 학용품비 등			51,110 엔	25,555 엔	-
	온라인 학습 통신비			14,000 엔	-	-
	※1 표 구분 I,II,III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4~6 학년의 통학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 · 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 입니다.					
	※3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 · 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 입니다.					
신청시기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 교육과(Tel075-414-583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2022 년 기준입니다.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초등학교에 재적중인 아동의 세대가 가계급변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자	이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해당 학교에 입학한 후에, 보호자의 실직·도산 등에 의해 일정이상 가계가 급변한 세대 • 보호자가 가계급변한 해의 연수입이 400 만엔 미만 상당 • 보호자의 자산보유액이 700 만엔 미만
지급액	상한 : 연액 336,000 엔 (월액 28,000 엔)
신청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가계급변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학교에 문의하신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 본 제도는 가계급변이 발생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계급변세대 이외에 대한 수업료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가방,내의,신발,양말 등) 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분
지급액	아동 1 인당 5,8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시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사업 (P.18) 으로 신청해주십시오.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에게 수학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학교급식비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 한 초급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의 수학을 위한 비용 부담을 필요로 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의 교육부조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생활보호계) (TEL075-414-4557 또는 456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4 편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 중학부 및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보호 실시기관이 취학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포함.이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함.)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교복 · 가방 · 신발 등의 구입비)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다음 해 중학교 에 입학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의「생활부조 (일시부조) 」			
	구 분	내 용	지급액	
	입학준비금	입학시 교복, 가방, 신발 등	81,000 엔 이내	
	【참고】입학준비금 이외에 생활보호법「교육부조」 (P.30) 에서 아래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준액	【학용품비】연필,노트, 지우개,정규,서도도구,바느질도구,체육용 신발등 구입비	【그외 교재비】 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 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 등 구입비	월액 5,100 엔
	학급비 등	학급비, 학생회비, PTA 회비 등		월액 1,000 엔이내
	교재비	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실비지급
	학교급식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실비지급
	교외활동참가비	숙바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		실비지급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		실비지급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		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59,800 엔 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33)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지원자금」【무이자 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 학교 중학부 포함)에 입학시에 필요로 하는 의복, 신발등의 구입비용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또는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해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에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대출액	아동 한명당 81,000 엔 이내
신청시기	입학전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차용서의 제출이 확인된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전에 반드시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⑦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취학통지서 및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③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④ 인감등록증명서 ⑤ 부양 사실에 관한 증명서 ⑥ 소득증명서류 ⑦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내 용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 중학생(의무 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P.29) 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아동 1 인당 연액 43,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table><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table>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내 용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 ※모자가정장학금 (P.28) 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 외		
지급액	아동 1 인 당 연액 43,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지급이 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4 월 ~ 5 월말일 이후는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일)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月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증명서 (사본) 의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② 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사항은교토부청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학용품 · 통학용품의 구입비, 학교급식비 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 (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및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보호 실시기관이 취학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포함)		
지급액	○생활보호법「교육부조」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준액	【학용품비】연필, 노트, 지우개, 서도도구, 바느질 도구, 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	【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 통학용신발, 실내화, 모자 등 통학용품등의 구입비
	학급비 등	학급비, 학생회비, PTA 회비 등	월액 5,100 엔
	교재비	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 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월액 1,000 엔 이내
	학교급식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실비지급
	교외활동참가비	숙박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	실비지급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	실비지급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등	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59,800 엔 이내)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31) 수학여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원조금 (P.3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33)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구분에 의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원조비【지급】

내 용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중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비등 일부를 원조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 생활보호 수급을 받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급액	※지급항목,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요보호자 수학여행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 (P.30) 급부 이외의 것) 2 준요보호자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통학비, 수학여행비, 의료비, 학교급식비 등 주 : 의료비 . . . 학교보건안전법 시행령 제 8 조가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신청시기	시정촌(市町村)및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거주 지역의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지급】

내 용	중학교 특별지원학급등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에서 규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특별지원학급에 취학하는 학생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 (P.30) 、 취학원조비 (P.31) 를 수급하는 경우는 일부 경비만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아래의 지급액은 국가가 정한 단가 (2022 년도 기준) 이며, 지급항목 및 지급액은 시정촌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 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		I	Ⅱ	Ⅲ
	학교급식비		실비의 1 / 2	실비의 1 / 2	-
	통학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직장실습교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교류 및 공동학습 교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수학여행비		28,860 엔	28,860 엔	-
	숙박 비포함 교외활동등 참가비		1,155 엔	1,155 엔	-
	숙박 포함 교외활동등 참가비		3,105 엔	3,105 엔	-
	학용품등 구입비		11,370 엔	11,370 엔	-
	신입학아동 학용품비 등		28,990 엔	28,990 엔	-
	체육실기용구비	유도	3,825 엔	3,825 엔	-
		검도	26,455 엔	26,455 엔	
		스키 등	19,015 엔	19,015 엔	
	확대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한권당 한도 5,250 엔)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한권당 한도 5,250 엔)	-
온라인 학습 통신비		7,000 엔	-	-	
※ 표 구분 I,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시기	시정촌(市町村)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 등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등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내 용	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중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지급액	○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1			I	Ⅱ	Ⅲ
	학교급식비			실비	실비의 1 / 2	-
	교통비	통학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2	실비 ※2	실비 ※2
		귀성비 39 왕복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교류 및 공동학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 / 2
		교류 및 공동학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 / 2
	기숙사 거주에 의 한 경비	침구구입비		5,510 엔	2,755 엔	-
		일용품등 구입비		141,560 엔	70,780 엔	-
		식비		148,850 엔	74,425 엔	-
	수학 여행 비	수학여행비	본인 경비	57,720 엔	28,860 엔	-
			보조인 경비	82,850 엔 ※2	41,425 엔 ※2	-
		교외활동등 참가비	본인 경비	24,660 엔	12,330 엔	-
			보조인 경비	36,980 엔 ※2	18,490 엔 ※2	-
	학용품 등 구입비			22,740 엔	11,370 엔	-
	확대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 산정한 액			한 권당 한도 10,500 엔	I 의 1 / 2	-
	신입학아동・생도 학용품비 등			57,980 엔	28,990 엔	-
	온라인 학습 통신비			14,000 엔	-	-
	※1 표 구분 I,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통학비 보조인 경비,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입니다.					
	신청시기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TEL075-414-583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2022 년 기준입니다.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중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세대가 가계급변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자	이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해당 학교에 입학한 후에, 보호자의 실직·도산 등에 의해 일정이상 가계가 급변한 세대 · 보호자가 가계급변한 해의 연수입이 400 만엔 미만 상당 · 보호자의 자산보유액이 700 만엔 미만
지급액	상한 : 연액 336,000 엔 (월액 28,000 엔)
신청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가계급변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학교에 문의하신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 본 제도는 가계급변이 발생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계급변세대 이외에 대한 수업료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이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가방,내의,신발,양말 등) 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분
지급액	학생 1 인당 6,8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시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31) 로 신청해주십시오.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에게 수학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학교급식비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한 중고급학교중급부에 통학하는 자녀의 수학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의 교육부조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생활보호계) (TEL 075-414-4557 또는 4564) 로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 」【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등 취학에 필요한 비용(학용품·교복·가방·신발의 구입비, 수험(검)료·입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자녀로 다음 해 고등학교 등에 취학 하는 분 ※고등학교 등 ① 고등학교 (전일제·정시제·통신제)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고등전문고교 ④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별과 제외) ⑤ 고등학교 등에서 취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이며 보통교육과목을 포함한 취업시간이 약 8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		
지급액	○생활보호법「생업부조」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준액	【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정규,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구입비 【그외】교외활동비, 통학용품등 구입비	월액 5,300 엔
	학급비	학급비, 학생회비,PTA 회비 등	월액 2,330 엔 이내
	교재비	정규 수업에서 사용되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전학생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 (교과서, 부교재적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실비지급
	수업료	수업료	아래※1、※2 참조
	입학료	입학료	공립고교입학료상당액
	입학고사료	입학고사료 (수험(검)료)	30,000 엔 이내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실비지급
	입학준비금	교복,통학용가방,신발, 와이셔츠 등의 구입비	87,900 엔 이내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 등	실비지급 (연간상한액 84,600 엔 이내)
	※1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1~3학년) 등 수업료는 공립고교취학지원금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에 의하여 급부대상외 ※2 고등전문학교(4, 5학년)등의 수업료는 수업료 감면조치등을 적용 한 후의 실제 지불액이 급부대상 ※3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60~61)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의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 또는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준비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자로,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사립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 또는 외국인학교 (※1) 에서 수학하고 있는 분 2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로, 국 · 공립 · 사립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 고등전문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음① ~ ⑤에 해당하는 분 ① 모자세대 ②부자세대 ③아동세대 ④장애인세대 ⑤장기요양세대 주 : ① ~ ③에 한해서는 세대원의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④, ⑤는 장애, 부상의 정도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수학하는 분은 대상외 · 「동종의 자금」대여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	단위 : 엔						
	세대 구분	명 칭	종 별		지급액		비 고
	생활보호 세대	입학 준비금	사립고교	전일제	110,000	-	1 학년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69,000	-	
		장학금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228,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 ※3
			외국인학교 ※1		전일제	228,000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입학 준비금	국공립고교	전일제	63,000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를 제외
				정시제			
			사립고교	전일제	178,000	-	1 학년 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137,000	-	
			통 신 제		45,000	-	
		장학금	국 공 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공과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192,000	※4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 제외)		168,000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396,000	33,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 ※3
				정시제	288,000	24,000	
			외국인학교 ※1		전일제	396,000	

		지원금 (학용 품비 등)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1 학년 60,00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제외 ·장학을 위한 급부금과 의 병급조정을 합 니다. ※5																									
※1 학교법인이 설치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상당과정 ※2 교토부내 사립고교는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과 교토부제도「교토부 사립고등학교 안 심수학지원제도」에서 실질수업료가 무상화가 되어지므로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되지 않습니다. ※3 교토부외 사립고교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및「효고 현 사립고교에 통학하고 있는 분의 학비경감」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4 고등전문학교는 고등교육 무상화제도가 적용되면 실질수업료가 무상화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 습니다. ※5 지원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 「장학을 위한 급부금」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생활보호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4 월말까지)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제 2 차 신청 : 6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6 월말까지)																														
지급 시기	<table><tr><td>입학준비금</td><td colspan="3">【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3・4 월 (1 차)、7 월 (2 차)</td></tr><tr><td rowspan="4">장학금</td><td></td><td>생활보호세대</td><td>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td></tr><tr><td>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td><td>4 월</td><td>4 월 (1 차)、7 월 (2 차)</td></tr><tr><td>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td><td>8 월</td><td>8 월</td></tr><tr><td>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td><td>12 월</td><td>12 월</td></tr><tr><td></td><td colspan="3">※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우,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tr><td>지원금 (학용품비 등)</td><td colspan="3">【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td></tr></table>						입학준비금	【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3・4 월 (1 차)、7 월 (2 차)			장학금		생활보호세대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	4 월	4 월 (1 차)、7 월 (2 차)	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	8 월	8 월	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	12 월	12 월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우,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학용품비 등)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		
입학준비금	【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3・4 월 (1 차)、7 월 (2 차)																														
장학금		생활보호세대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	4 월	4 월 (1 차)、7 월 (2 차)																												
	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	8 월	8 월																												
	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	12 월	12 월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우,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학용품비 등)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																														

신청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역의 부보건소(P.2) 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생활보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증명서 등)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 . . . 장학금지급대상자 만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시정촌 민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서류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증명서)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 . . . 장학금지급대상자 만 ④ 지원금이용예정서 ▶ 신체장애인 세대 . . . 신체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연금수첩 사본 ▶ 장기요양자 세대 . . . 의사 진단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동종의 자금은 다음의① ~ ⑦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5 ~ 56)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7)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 ⑤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5) ⑥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학교에 지급 (P.68) ⑦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P.71) ※①~⑦이외에도 유사제도에 의한 급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 대출】

내 용 (자금의 종류)	1 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공적 교육지원대출 제도※1」의 차입이 가능할 때까지 「츠나기자금※2」에서 빌려드립니다. ※1 「공적 교육지원대출제도」는 다음①,②,③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취학지원사업 수학기금 (P. 46 ~ 47、P.76 ~ 77) ② 모자 부자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P.43 ~ 44、P.74) ③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기금 (P.81~82) ※2 「츠나기 자금」은 ※1 의①은 4 월이후 대출. ②,③또한 대출이 4 월이후 인 점에서 납입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교육지원비는 ① ~ ③ 중 어느 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까지 「츠나기 자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① ~ ③의 대출을 받은 경우】입학 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하셔야 합니다. 【① ~ ③의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츠나기자금」이 아닌, 계속 대출해드립니다. 2 취학준비비 : 고등학교등 입학 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 배 이내 소득수준세대)의 자녀로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중고일관교의 고교), 전수학교 (고등과정),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취학하는 분 ※ 고교생 등 수학지원사업의 「수학준비금」을 신청 한 경우 (예약신청 포함) 는, 「2 취학준비비」 대출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	1 교육지원비 : 6 개월 상한으로 월단위로 빌려드립니다. 단 위 : 엔 <table><tr><th colspan="2" rowspan="2">학교종별등</th><th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h></tr><tr><th>자택통학</th><th>자택외통학</th></tr><tr><td rowspan="2">고등학교등</td><td>국공립</td><td>18,000</td><td>23,000</td></tr><tr><td>사 립</td><td>30,000</td><td>35,000</td></tr><tr><td rowspan="2">고등전문학교</td><td>국공립</td><td>21,000</td><td>22,500</td></tr><tr><td>사 립</td><td>32,000</td><td>35,000</td></tr></table>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대출 한도액×1.5 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분 대출로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P.5) 대출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2 취학준비금 : 500,000 엔 이내	학교종별등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고등학교등	국공립	18,000	23,000	사 립	30,000	35,000	고등전문학교	국공립	21,000	22,500	사 립	32,000	35,000
학교종별등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고등학교등	국공립	18,000	23,000																		
	사 립	30,000	35,000																		
고등전문학교	국공립	21,000	22,500																		
	사 립	32,000	35,000																		
신청 (상담) 시기	※지망교를 결정하고, 입학 팜플렛등에서 입학에 필요한 경비가 확인되는 시점 (중학교 3 학년 가을쯤부터) 에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환기간	1 교육지원비 : 「츠나기자금」은 입학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그외는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 배이내 (특별분은 4 배 이내(단, 최장 20 년))(P.73 과 같음) 2 취학준비비 :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8 년 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로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고등학교 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수학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입학금,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또는 부자가정의 아버지로서, 다음년도 다음①또는②에 진학 할 예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분 ①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 (고교과정) 에 진학 ②수업(修業)시설에 입소 (수업자금) ※ ①에 해당하는 분 . . . 수학자금,취학준비금 대출신청가능 ②에 해당하는 분 . . . 취학준비금만 대출신청가능 · 동종의 자금 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종의 자금은 비교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액	1 수학자금 월액한도액 (①에 해당되는 분) 단위 : 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학년별</th><th>1 학년</th><th>2 학년</th><th>3 학년</th><th>4 학년</th><th>5 학년</th></tr> </thead> <tbody> <tr> <th rowspan="2">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th><th rowspan="2">국공립</th><th>자택통학</th><td>27,000</td><td>27,000</td><td>27,000</td><td></td><td></td></tr> <tr> <th>자택외통학</th><td>34,500</td><td>34,500</td><td>34,500</td><td></td><td></td></tr> <tr> <th rowspan="2">사 립</th><th rowspan="2">사 립</th><th>자택통학</th><td>45,000</td><td>45,000</td><td>45,000</td><td></td><td></td></tr> <tr> <th>자택외통학</th><td>52,500</td><td>52,500</td><td>52,500</td><td></td><td></td></tr> <tr> <th rowspan="4">학 고 교 등 전 문</th><th rowspan="2">국공립</th><th>자택통학</th><td>31,500</td><td>31,500</td><td>31,500</td><td>67,500</td><td>67,500</td></tr> <tr> <th>자택외통학</th><td>33,750</td><td>33,750</td><td>33,750</td><td>76,500</td><td>76,500</td></tr> <tr> <th rowspan="2">사 립</th><th>자택통학</th><td>48,000</td><td>48,000</td><td>48,000</td><td>98,500</td><td>98,500</td></tr> <tr> <th>자택외통학</th><td>52,500</td><td>52,500</td><td>52,500</td><td>115,000</td><td>115,000</td></tr> </tbody> </table> ○수업자금 월액한도액 68,000 엔 (②에 해당되는 분) ○ 취학준비자금 한도액 단위 : 엔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4">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 에 입학</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150,000</td></tr> <tr> <td>자택외통학</td><td>160,000</td></tr> <tr> <td rowspan="4">사 립</td><td>자택통학</td><td>410,000</td></tr> <tr> <td>자택외통학</td><td>420,000</td></tr> <tr> <td colspan="2" rowspan="2">수업(修業)시설에 입소</td><td>자택통학</td><td>272,000</td></tr> <tr> <td>자택외통학</td><td>282,000</td></tr> </tbody> </table>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	국공립	자택통학	27,000	27,000	27,000			자택외통학	34,500	34,500	34,500			사 립	사 립	자택통학	45,000	45,000	45,0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학 고 교 등 전 문	국공립	자택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 립	자택통학	48,000	48,000	48,000	98,500	98,5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115,000	115,000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 에 입학	국공립	자택통학	150,000	자택외통학	160,000	사 립	자택통학	410,000	자택외통학	420,000	수업(修業)시설에 입소		자택통학	272,000	자택외통학	282,000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	국공립	자택통학	27,000	27,000	27,000																																																																																		
		자택외통학	34,500	34,500	34,500																																																																																		
사 립	사 립	자택통학	45,000	45,000	45,0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학 고 교 등 전 문	국공립	자택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 립	자택통학	48,000	48,000	48,000	98,500	98,5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115,000	115,000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 에 입학	국공립	자택통학	150,000																																																																																				
		자택외통학	160,000																																																																																				
	사 립	자택통학	410,000																																																																																				
		자택외통학	420,000																																																																																				
수업(修業)시설에 입소		자택통학	272,000																																																																																				
		자택외통학	282,000																																																																																				

신청 (상담) 시기	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부(府)보건소 (P.2)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세대전원의 주민표(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인감등록증명서 ④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소득증빙서류 ⑥재학(적)증명서【수학자금, 수업자금의 경우】 합격통지서 【취학준비자금】 ⑦학교안내 혹은 학비납입통지 등 필요 경비가 명확히 기재된 것 ⑧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 ~ ③과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대출 (P.42、P.73)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 (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개호복지사의 양성과정을 가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고 있으며 장래 개호 복지사로서 교토부내의 개호시설에서 취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수학준비금 이나 개호실습비 등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가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교토부내의 개호시 설에 개호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
대출액	1 수학준비금 30,000 엔이내 (입학연도에 1 회) 2 개호실습비 30,000 엔이내 (1 년도마다) 3 국가시험수험대책비용 40,000 엔이내 (1 년도마다) 4 취직준비금 200,000 엔이내 (졸업연도에 1 회)
신청시기	입학 후 매년 4 ~ 5 월
지급시기	연 1 회 4 월 경 (입학연도는 6 월경・취직준비금은 졸업연도인 11 월경)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연대보증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분)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문의처	교토부사회복지협의회 (T E L 075-252-6292) 로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 년 이내에 개호복지사로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개호시 설에서 개호복지사로서 개호 업무에 3 년간 종사한 경우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해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대여제도	2 수학지원특별융자이자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 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수학금 대여제도」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의 융자를 이용했을 때에 지급되어진 이자의 전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부(府)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의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④)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여제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주 생계유지자의 년수입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 이하의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또는 융자액	국공립 월액 18,000 엔이내 (천엔단위) 사 립 월액 30,000 엔이내 (천엔단위) ※자택외통학은 5,000 엔 가산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자는, 그 지급액에 따라 대출액의 감액 조정을 합니다.	국공립 일괄 (3 년분) 648,000 엔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 엔이내 사 립 일괄 (3 년분) 1,080,000 엔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 엔이내
	※중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의 3 학년 전원에게 예약신청 안내 리플렛을 배부합니다. 예약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중학교에「안내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 수속 및 대출 시기	• 다음① ~ ⑤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예약신청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 (중학교 3 학년 10 월 ~ 12 월중순) →중학교에 ② 부(府)에서 예약결정통지서를 교부 ③ 합격발표후,예약본신청서제출 (중학교 3 학 년 2 월 ~ 3 월중순) →중학교에 ④ 진학후,부(府)에서 대여결정통지 교부 ⑤ 대출 (4 월말 ~ 6 월말)	• 다음① ~ ⑧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이용신청 (중학교 3 학년 10 월 ~ 12 월중 순) →중학교에 ②특별용자신청자격인정신청 (중학교 3 학년 2 월 ~ 3 월) ③부(府)에서인정증 교부(진학후 4 월하순 ~) ④금융기관에 신청(진학후 5 월 ~ 8 월말일) ⑤금융기관 심사후 용자결정 ⑥용자 (5 월상순 ~ 6 월중순) ⑦지급되어진 1 년분에 대한 이자보조를 부(府) 에 신청 (익년 6 월) ⑧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입학후에도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5 월중순까지) → (P.76 ~ 77)														
대출 또는 용자 시기	부(府)에서 년 2 회로 나누어 계좌이체 <table><tr><td>구분</td><td>이체시기</td></tr><tr><td>4 월분 ~ 9 월분</td><td>4 월말 ~ 6 월말</td></tr><tr><td>10 월분 ~ 3 월분</td><td>10 월말</td></tr></table>	구분	이체시기	4 월분 ~ 9 월분	4 월말 ~ 6 월말	10 월분 ~ 3 월분	10 월말	<table><tr><td>용자방법</td><td>용자시기</td></tr><tr><td>일괄</td><td>입학년도의 5 월 ~ 8 월</td></tr><tr><td>분할</td><td>첫해 5 월 ~ 8 월 다음해이후 4 월 ~</td></tr></table>	용자방법	용자시기	일괄	입학년도의 5 월 ~ 8 월	분할	첫해 5 월 ~ 8 월 다음해이후 4 월 ~	
구분	이체시기														
4 월분 ~ 9 월분	4 월말 ~ 6 월말														
10 월분 ~ 3 월분	10 월말														
용자방법	용자시기														
일괄	입학년도의 5 월 ~ 8 월														
분할	첫해 5 월 ~ 8 월 다음해이후 4 월 ~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요하나 보증 (수수) 료 자기부담													
상환 기간	대출종료후 20 년이내 (반환유예는 유예종료후 20 년이내)	최초 용자받은 달,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 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중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동종의 자금은 다음① ~ ⑩와 같습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대출 (P.43 ~ 44、P.74) ②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 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5) ③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39 ~ 41、P.52 ~ 54)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 ~ 59) ⑤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7)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0 ~ 61) ⑦ 간호사등 수학자금 대출 (P.102) ⑧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 (P.81~82) ⑨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급부 (P.83~84) ⑩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중학교 3 학년의 대출이 아니므로, 입학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 복지 자금 대출금 (P.43)에 대해,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생활 보호를 수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P.38)의 대상이 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지사사무소(P.4)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고등학생등 수학 지원사업 (수학준비금)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게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해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여제도	2 수학준비금 특별융자 이자보조 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 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여제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의 융자를 이용했을 때에 지급되어진 이자의 전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부(府)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여제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주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150 만엔 이상의 경우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⑥ 고등전문학교
	주 1 :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P.46 ~ 47) 」의「1 고등학교등 수학금대여제도」 대상자에 한해서,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학준비금만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 2 :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또는 융자액	입학시 1 회 국공립 50,000 엔 정액 사 립 250,000 엔 정액	
	※중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3 학년 전원에게 예약신청안내 리플렛을 배부합니다. (모두 P.46 ~ 47 의 수학금과 함께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약 신청 수속 및 대출 시기	• 다음① ~ ④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이용희망확인 (중학교 3 학년 10 월 ~12 월 중순) ② 대여신청(중학교 3 학년 2 월 ~3 월) ③ 진학후, 부(府)에서 대여결정통지서를 교 부 ④ 대출 (4 월말 ~6 월말)	• 다음① ~ ⑧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이용희망확인(중학교 3 학년 10 월 ~12 월 중순) ② 특별용자신청자인정신청 (중학교 3 학년 2 월 ~3 월) ③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진학후 4 월하순 ~) ④ 금융기관에 신청(진학후 5 월 ~7 월말일) ⑤ 금융기관 심사후 용자결정 ⑥ 용자 (5 월상순 ~ 6 월중순) ⑦ 지급되어진 1 년분에 대한 이자보조를 부 (府)에 신청 (익년 6 월) ⑧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요하나 보증 (수수) 료 자기부담
상환 기간	수학금 대출 종료 후, 7 년이내	최초 용자받은 달,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 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중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동종의 자금은 다음① ~ ⑦과 같습니다. ① 모자 부자 복지자금대출금 (취학준비금) 대출 (P.43 ~ 44、P.74)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입학준비금) 지급 (P.39 ~ 41、P.52 ~ 54)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8~59) ④ 모자가정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7) ⑤ 생활복지자금대출금 (취학준비비) 대출 (P.42、P.73)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0 ~ 61) ⑦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중학교 3 학년의 대출이 아니므로, 입학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 복지 자금 대출금 (P.43)에 대해,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생활 보호를 수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 (P.38)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지사무소(P.4)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제 7 편 고등학생 등을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취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학용품·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등에 취학하는 분 ※고등학교 등 ① 고등학교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고등전문학교 ④ 특별지원학교 고등부(별과 제외) ⑤ 고등학교 등에서의 취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수업년한이 3 년 이상으로, 또한 보통교육과목을 포함하는 취업시간이 대략 800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액	○생활보호법「생업부조」		
	구 분	내 용	기준액
	기본액	【학용품비】연필, 노트, 지우개, 정규, 바느질 도구, 체육용 신발 구입비 【그외】교외활동비, 통학용품 등 구입비	월액 5,300 엔
	학급비	학급비, 학생회비, PTA 회비 등	월액 2,330 엔이내
	교재비	정규 수업에서 사용되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전학생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 (교과서, 부교재적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 악기) 의 구입비, 정규 교재 이용에 필요한 금액 (ICT 를 활용한 교육에 드는 통신비)	실비지급
	수업료	수업료	아래※1、※2 참조
	통학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실비지급
	학습지원비	과외클럽활동비 등	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84,600 엔 이내)
※1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1~3 년생) 등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립고교취학지원금 및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에 의하여 급부대상외 ※2 고등전문학교(4·5) 등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업료감면조치등을 적용 한 후의 실제 지불액이 급부대상 (상한 있음) ※3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60 ~ 61)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의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 또는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준비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사립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 또는 외국인학교 (※ 1) 에서 수학하고 있는 분 2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로, 국 · 공립 · 사립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 고등전문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음① ~ ⑤에 해당하는 분 ① 모자세대 ②부자세대 ③아동세대 ④장애인세대 ⑤장기요양세대 주 : ① ~ ③에 한해서는 세대원의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④, ⑤는 장애, 부상의 정도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수학하는 분은 대상외 ▶ 「동종의 자금」대여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	세대 구분	명 칭	종 별		지급액		비 고	
					연 액	월 액		
	생활보호 세대	입학 준비금	사립고교	전일제	110,000	-	1 학년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69,000	-		
		장학금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228,000	19,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 3	
			외국인학교 ※ 1	전일제	228,000	19,000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입학 준비금	국공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63,000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를 제외	
			사립고교	전일제	178,000	-	1 학년 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137,000	-		
			통신제		45,000	-		
		장학금	국공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공과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192,000	16,000	※ 4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 제외)		168,000	14,000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396,000	33,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 ※ 3	
				정시제	288,000	24,000		
			외국인학교 ※ 1	전일제	396,000	33,000		

		지원금 (학용품비 등)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1 학년 60,000	-	·특별지원학교 고등 부,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제외 ·장학을 위한 급부금 과의 병급 조정을 합 니다. ※5																																														
※1 학교법인이 설치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상당과정 ※2 교토부내 사립고교는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과 교토부제도「교토부 사립고등학 교 안심수학지원제도」에서 실질수업료가 무상화가 되어서므로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되지 않 습니다. ※3 교토부의 사립고교의 장학금에 관해서는, 표의 금액과 정부 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및 효고현·나라현 사립고교에 통학하고 있는 분의 학비경감 (보조금) 과의 차액을 지급 합니다. ※4 고등전문학교는 고등교육 무상화제도가 적용되면 실질수업료가 무상화되기 때문에 지급되 지 않습니다. ※5 지원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 「장학을 위한 급부금」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생활보호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4 월말까지)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제 2 차 신청 : 6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6 월말까지)																																																				
지급 시기	<table><tr><td>입학준비금</td><td colspan="6">【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3・4 월 (1 차) 、 7 월 (2 차)</td></tr><tr><td rowspan="4">장학금</td><td></td><td colspan="2">생활보호세대</td><td colspan="3">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td></tr><tr><td>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td><td colspan="2">4 월</td><td colspan="3">4 월 (1 차) 、 7 월 (2 차)</td></tr><tr><td>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td><td colspan="2">8 월</td><td colspan="3">8 월</td></tr><tr><td>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td><td colspan="2">12 월</td><td colspan="3">12 월</td></tr><tr><td colspan="7">※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 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tr><td>지원금 (학용품비 등)</td><td colspan="6">【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td></tr></table>							입학준비금	【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3・4 월 (1 차) 、 7 월 (2 차)						장학금		생활보호세대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	4 월		4 월 (1 차) 、 7 월 (2 차)			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	8 월		8 월			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	12 월		12 월			※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 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학용품비 등)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					
입학준비금	【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3・4 월 (1 차) 、 7 월 (2 차)																																																				
장학금		생활보호세대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	4 월		4 월 (1 차) 、 7 월 (2 차)																																																	
	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	8 월		8 월																																																	
	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	12 월		12 월																																																	
※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 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학용품비 등)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																																																				
신청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역의 부보건소(P2) 에 제출하여 주 십시오. 【생활보호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생활보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증명서 등)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시정촌 민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서류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증명서)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④ 지원금이용계획서 ▶신체장애인 세대・・・신체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연금수첩 사본 ▶장기요양자 세대・・・의사 진단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종의 자금은 다음의① ~ ⑦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5~56)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7)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59) ⑤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5) ⑦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학교에 지급 (P.68) ⑧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P.71) ※①~⑦이외에도 유사제도에 의한 급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장학을 위한 급부금(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지급】

내 용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세대의 학생에 대해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지급하고 지원합니다. <국공사립고등학교 등>
대상자	다음 ①~③모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 ① 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의 학생 또는 도부현(道府県)민세소득률액과 시정촌(市町村)민세 소득률액 비과세 세대의 학생 (실업, 파산등에 의해 가계가 급변해, 가계급변 발생 후 1 년간의 수입 예상이 주민세 소득 할액 비과세 상당으로 인정받은 세대(이하 가계 급변세대)의 학생도 해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보호자(친권자 등)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 2018 년 4 월 1 일 이후에 입학하였고, 나라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또는 다시 배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진 자(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함)일 것 ※「동종의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동종의 자금 대출액이나 지급액을 경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 자금에 대해서는, 비교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	①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 국공립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 년액 32,300 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 년액 52,600 엔 ②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률액 및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할액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수급세대를 제외함)로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③의 경우를 제외함) 국공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14,100 엔 통신제, 전공과 : 년액 50,500 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34,600 엔 통신제, 전공과 : 년액 52,100 엔 ③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률액 및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할액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수급세대를 제외함)로 부양받고 있는 둘째 이후의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 또는 부양받고 있는 고등학생 이외에(중학생을 제외함) 15 세이상 23 세 미만의 부양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세대 국공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43,700 엔 통신제, 전공과 : 년액 50,500 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52,000 엔 통신제, 전공과 : 년액 52,100 엔 주: 가계급변세대의 경우, 가계가 급변한 시기에 따라 연액 혹은 월부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7 월경 (7 월 1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단, 가계급변세대의 경우, 가계가 급변한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신입생의 경우, 일부 (4 ~ 6 월분) 의 조기급부를 희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4 ~ 6 월분) 의 조기급부를 희망하는 경우, 4 ~ 5 월경 (4 월 1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지급시기	10 월 하순이후 일부 (4 ~ 6 월분) 의 조기급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6 월 하순 이후

신청수속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에서 안내가 있으므로, 신청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 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 및 시정촌(市町村)민세 소득할액 비과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측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현(県)의 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 가계급변세대의 경우, 가계급변상황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첨부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공립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TEL 075-574-7539) · 사립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또는 교토부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
비 고	▶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종의 자금 중 대출액 또는 지급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다음 ①~⑤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49、P76~79)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39~41、P52~54)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7) ④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59) ⑤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5)

모자가정장학금등【지급】

내 용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고등학생(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자금은 비교란을 참고 해 주십시오.																				
지급액	1 장학금 학생 1 명당 년액 64,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학생 1 명당 35,000 엔 (고등학교 1 학년 대상)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로 5 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함)																				
신청시기	1 장학금 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 접수 (최종기한 : 2 월 말일)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5 월말일까지 ※입학 전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2 월까지																				
지급시기	1 장학금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 <tr> <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r> <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 <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body> </table>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8 월말 (입학전 지급인 경우는 3 월)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8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0 ~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②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편부모가정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 · 아동위원의 증명 ② 재학증명 (학교장 증명) ▶신청서는 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 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고등학교입학준비금은 입학시에 한합니다) ・ 동종 자금은 다음① ~ ④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 · 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39 ~ 41、P.52 ~ 54)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59) ④ 기능습득자금 지급 (P.98) 동종 자금 중,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다음 ⑤입니다. ⑤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5~56)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내 용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고등학생(특별지원학교 고등부·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등을 잃은 고등학생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자금은 아래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	1 장학금 학생 1 명당 년액 64,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학생 1 명당 35,000 엔 · · · 고등학교 1 학년 대상 (고등학교 입학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로 5 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함)																				
신청시기	1 장학금 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 접수 (최종기한 : 2 월 말일)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1 차 신청 : 입학전 2 월 말일 2 차 신청 : 4 월 ~ 5 월 말일																				
지급시기	1 장학금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11 월말</td></tr> <tr> <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td></tr> <tr> <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말</td></tr> <tr> <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td></tr> </tbody> </table>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1 차신청 : 3 월 말일, 2 차신청 : 8 월 말일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11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
대상자구분	신청월	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	지급월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4 ~ 3 월	11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																		
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	4 ~ 5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말																		
	6 ~ 2 월	신청월의 익월 ~ 3 월	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 말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 해 주십시오.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 (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 증명서(사본)의 첨부가있는 경우는 불요) ② 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②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합격통지서(사본) 또는 입학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입학 후 5 월 말일까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사항은교토부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매년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종 자금 중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음①~③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장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39 ~ 41、P.52 ~ 54) ③ 모자가정장학금 등 지급 (P.57) 동종 자금 중,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다음 ④입니다. ④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P.55 ~ 56)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내 용	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지급액	○대상 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1		I	Ⅱ	Ⅲ
	교과서 구입비		실비	실비	실비
	학교급식비		실비	실비의 1/2	-
	교 통 비	통학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 2	실비 ※ 2
		귀성비 39 왕복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 2	실비 ※ 2
		직장실습비		실비	실비의 1/2
		교류 및 공동학습비 (전공과 제외)		실비	실비의 1/2
	기숙사 거주에 의한 경비		침구구입비 (전공과 제 외)	5,510 엔	2,755 엔
			일용품등 구입 비	141,560 엔	70,780 엔
			식비	139,750 엔	69,875 엔
	수 학 여 행 비	수학여행비 (전공과제외)	본인 경비	107,810 엔	53,905 엔
			보조인 경비	155,760 엔※ 2	77,880 엔※ 2
		교외활동비 (전공과제외)	본인 경비	24,820 엔	12,410 엔
			보조인 경비	37,220 엔※ 2	18,610 엔※ 2
		직장실습숙박비		7,520 엔	3,760 엔
	학용품구입비 (전공과 제외)		32,270 엔 ICT 기기 등 구 입한 경우 50,9 30 엔 가산	16,135 엔 ICT 기기 등 구 입한 경우 50,9 30 엔 가산	ICT 기기 등 구입한 경우 50,930 엔 가 산
	음성교재비 1 교과 단가로 산정한 금액 (전공과 제외)		1 교과 한도 19,170 엔	I 의 1 / 2	-
	신입학 아동・학생 학용품비 등 (전공과 제외)		57,980 엔	28,990 엔	-
	온라인 학습 통신비		14,000 엔	-	-

	※1 표 구분 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통학비 보조인 경비, 귀성비 보조인 경비,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보조인입니다.
신청시기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Tel075-414-5834)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금액은 2022 년기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통학비 보조금【지급】

내 용	고액의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고등학생 보호자분께 통학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부내 공립 또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다음①~③의 모두 해당하는 분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통학을 위한 교통비)를 수급받고 있지 않은 분 ② 다음의 2-1 또는 2-2 에 해당되는 분 2-1 학생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전체의 전년도 소득이 다음 별표 1 또는 별표 2(공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공립고교】,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사립고교】)의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 2-2 학생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체의 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과 시정촌(市町村)민 소득할액 (이하「세대 전체의 주민세」라고 표기합니다.) 가 비과세인 분 별표 1 <table> <tr> <th>세대인원</th><th>소득기준액</th></tr> <tr> <td>3 인 이하</td><td>6,849,000 엔</td></tr> <tr> <td>4 인</td><td>7,062,000 엔</td></tr> <tr> <td>5 인</td><td>7,275,000 엔</td></tr> <tr> <td>6 인</td><td>7,488,000 엔</td></tr> <tr> <td>7 인 이상</td><td>7,488,000 엔 + 213,000 円 / 1 인 증가 당</td></tr> </table> 별표 2 【공립고교】 <table> <tr> <th>세대인원</th><th>소득기준액</th></tr> <tr> <td>1 인</td><td>1,460,000 엔</td></tr> <tr> <td>2 인</td><td>2,060,000 엔</td></tr> <tr> <td>3 인</td><td>2,760,000 엔</td></tr> <tr> <td>4 인</td><td>3,230,000 엔</td></tr> <tr> <td>5 인</td><td>3,590,000 엔</td></tr> <tr> <td>6 인</td><td>4,060,000 엔</td></tr> <tr> <td>7 인 이상</td><td>4,060,000 엔 + 470,000 엔 / 1 인 증가 당</td></tr> </table> · 상기 소득금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1 모자・부자세대 280,000 엔 2 장애인 1 인당 320,000 엔 3 장기요양자로 요양을 위해 경상적으로 특별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사립고교】 <table> <tr> <th>세대인원</th><th>소득기준액</th></tr> <tr> <td>2 인 이하</td><td>3,001,000 엔</td></tr> <tr> <td>3 인</td><td>3,347,000 엔</td></tr> <tr> <td>4 인</td><td>3,571,000 엔</td></tr> <tr> <td>5 인</td><td>3,785,000 엔</td></tr> <tr> <td>6 인</td><td>3,969,000 엔</td></tr> </table>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3 인 이하	6,849,000 엔	4 인	7,062,000 엔	5 인	7,275,000 엔	6 인	7,488,000 엔	7 인 이상	7,488,000 엔 + 213,000 円 / 1 인 증가 당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1 인	1,460,000 엔	2 인	2,060,000 엔	3 인	2,760,000 엔	4 인	3,230,000 엔	5 인	3,590,000 엔	6 인	4,060,000 엔	7 인 이상	4,060,000 엔 + 470,000 엔 / 1 인 증가 당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2 인 이하	3,001,000 엔	3 인	3,347,000 엔	4 인	3,571,000 엔	5 인	3,785,000 엔	6 인	3,969,000 엔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3 인 이하	6,849,000 엔																																								
4 인	7,062,000 엔																																								
5 인	7,275,000 엔																																								
6 인	7,488,000 엔																																								
7 인 이상	7,488,000 엔 + 213,000 円 / 1 인 증가 당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1 인	1,460,000 엔																																								
2 인	2,060,000 엔																																								
3 인	2,760,000 엔																																								
4 인	3,230,000 엔																																								
5 인	3,590,000 엔																																								
6 인	4,060,000 엔																																								
7 인 이상	4,060,000 엔 + 470,000 엔 / 1 인 증가 당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2 인 이하	3,001,000 엔																																								
3 인	3,347,000 엔																																								
4 인	3,571,000 엔																																								
5 인	3,785,000 엔																																								
6 인	3,969,000 엔																																								

	7 인 이상 3,969,000 엔에, 세대인수가 6 인을 넘으면 1 인 증가에 대해 162,000 엔을 더한 금액
	③ 1 개월 통학비부담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기「별표 1」에 해당 . . . 22,100 엔 ▶ 상기「별표 2」에 해당 . . . 17,000 엔 ▶ 세대 전체의 주민세가 비과세 . . . 10,000 엔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분은 지급 대상 외
지급액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 (22,100 엔 또는 17,000 엔 또는 10,000 엔) × 정기권 등 구입 월수) × 1 / 2 예 1)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275,000 円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275,000 엔 - (22,100 엔×11 개월)) ×1/2 = 15,950 엔 1 년간 15,000 엔의 보조금 지급.(1,000 엔 미만 절사) 예 2)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220,000 円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220,000 엔 - (17,000 엔×11 개월)) ×1/2 = 16,500 엔 1 년간 16,500 엔의 보조금 지급. (1,000 엔 미만 절사) 예 3)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165,000 円 세대전체의 주민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65,000 엔 - (10,000 엔×11 개월)) ×1/2 = 27,500 엔 1 년간 27,000 엔의 보조금 지급. (1,000 엔 미만 절사)
신청시기	원칙 6 ~ 7 월 (8 월 이후에 이사 등으로 지급대상이 된 경우는 수시접수)
지급 시기	4 월~9 월분, 10 월~3 월분, 년 2 회 지급 지급시기는 사무 수속의 시기에 따라 상이함
신청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후, 다음의 ①, ②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소득에 관한 증명서 ② 권면액 (금액이 표시되어진 면) 의 복사 정기권의 구입에 의한 신청 . . . 정기권의 권면 복사 회수권의 구입에 의한 신청 . . . 회수권의 영수증 ※ 모두 2022 년 4 월 1 일 이후 구입한 것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부청담당과> 공립고교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7)

정시제 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 과정 교과서 · 학습서 보조금

내 용	교토부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구입하는 교과서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고등학교의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장학을 위한 급부금」수급자는 제외) ① 직업학생으로 보조를 희망하는 분 ② 직업학생 이외의 학생 중, 구직중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곤란한 자 중 보조를 희망하는 분 ※ 직업학생은 정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분 (자영업 종사자 포함) 또는 1 년간 90 일 이상 파트와 아르바이트로 취업하고 있는 분
신청시기	9 월
지급시기	12 월
신청수속	교과서등 취급서점에서 현금구입 후, 보조금교부신청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 ※ 1 , 2 모두 인정요건에 따라 아래의 증명서 등의 첨부이 필요합니다. · 직업학생 재직증명 등 · 직업학생이외의 분 . . 진단서, 헬로워크카드 (사본) 등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부청담당과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 : 075-574-7516)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 수학장려금【무이자대출】

내 용	정시제과정 · 통신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학장려금을 대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경우, 대출금 반환면제가 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공립 · 사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 · 통신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타 부현(府県)의 광역통신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음 ① ~ ③ 모든조건에 해당하는 분 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저히 취학이 곤란한 분 ② 경제적 수입 (생활을 위한 수입) 을 얻는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분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대여를 받고 있지 않는 분																
대출액	<table border="1"> <tr> <th rowspan="2">학년 (차)</th><th>과정</th><th>정시제</th><th>통신제</th></tr> <tr> <th></th><th></th><th></th></tr> <tr> <td rowspan="2">1 ~ 4 년 (차)</td><td>공립</td><td>월액 14,000 엔</td><td>월액 14,000 엔</td></tr> <tr> <td>사립</td><td>월액 29,000 엔</td><td>월액 14,000 엔</td></tr> </table>			학년 (차)	과정	정시제	통신제				1 ~ 4 년 (차)	공립	월액 14,000 엔	월액 14,000 엔	사립	월액 29,000 엔	월액 14,000 엔
학년 (차)	과정	정시제	통신제														
1 ~ 4 년 (차)	공립	월액 14,000 엔	월액 14,000 엔														
	사립	월액 29,000 엔	월액 14,000 엔														
신청시기	원칙 4 월 ~ 6 월																
대출시기	년 3 회 (원칙 7 월, 11 월,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②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소득에 관한 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등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연대 보증인	2 명																
상환시기	대출 종료월의 익월부터 6 개월 경과후, 일괄상환 또는, 대출시기에 상당하는 기간내 (단, 재학중에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 졸업 한 경우 상환이 면제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장학을 위한 급부금(P57)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액을 조정합니다. 공립고등학교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075-574-7516) 사립고등학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7)																

공립 고교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부내의 공립고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 지원으로써, 소득제한의 기준액 미만의 세대의 학생에 대해, 「취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학교설치자・학교에 수업료로 할당하기 때문에, <u>학생・보호자에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u>)
대상자	2014 년 4 월 이후의 입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의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x 6%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의 액(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공제의 액에 3/4 을 곱함)]에 의한 산출액의 합계액이 산정기준액(304,200 엔)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확정 신청을 행하고, 확정된 경우,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상화 교육 입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세대는, 수업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급액	취학지원금・・・수업료와 동일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부립고교 전일제 월액 9,900 엔 (전일제는 36 개월) 정시제 월액 1,250 엔 (16 단위 이상의 경우) (정시제는 48 개월) 통신제 년액 175 엔 (1 단위 당) (통신제는 48 개월)
신청시기	수급자격 확정 신청・・・입학시인 4 월 경 (입학한 고교에 제출) 수입상황서・・・매년 7 월 경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등의 확인이 필요)
지급 시기	정부의 교부에 따라, 수업료에 충당합니다. (<u>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u>)
신청 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급자격 확정 신청(4 월)・・・입학한 학교에, 「수급자격 확정 신청서」「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등을 알 수 있는 서류(친권자 합산, 전전년도의 소득에 준하는 것)」을 제출 수입 상황서 제출(7 월)・・・「수입 상황서」「마이넘버 관계 서류 또는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친권자 합산, 전년도 소득에 준하는 것)」을 제출 ※이미 마이넘버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이넘버 관계 서류 또는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및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 075-574-75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교토시립 고등학교등은 교토시교육위원회 조사과 (TEL075-222-3817)).
비고	▶ 매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제한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학지원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실직, 도산 등에 의해 가계가 급변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수업료의 감면조치 신청제도가 있으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중도퇴학을 당한 분이 취학지원금의 지급기간 전일제 36개월(정시제・통신제 48개월)을 넘어 재학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액 미만이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최대 12개월(정시제・통신제 최대 24개월)까지 취학지원금 상당액의 지원(다시배우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평성 25년도말 미공립고교 등재 학생은, 계속해서 수업료 불징수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고등학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사립고등학교 등에(교토부외도 포함)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립고등학교 ① 사립고등학교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② 사립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중고일관교 고등학교) ③ 사립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고등전문학교 (1 학년 ~ 3 학년) ⑤ 전수학교 고등과정 ※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자, 전공과 · 별과 학생 및 과목 이수생, 청강생은 지급대상 외
지급액	▶친권자의「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정령지정 도시인 경우에는 조정공제의 액에 3 / 4 를 곱한다) 」 총합이 304,200 엔 미만 → 월액 9,900 엔 (년액 118,800 엔) ▶친권자의「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정령지정 도시인 경우에는 조정공제의 액에 3 / 4 을 곱한다) 」 총합이 154,500 엔 미만 → 가산지급 월액 33,000 엔 (년액 396,000 엔) ※통신제 : 월액 24,750 엔 (년액 297,0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입학시인 4 월 경 ▶수입상황서 (계속 신청) : 6 ~ 7 월 경 지급시기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사립고교생을 위한 제도

사립 고등학교 안심 수학 지원 사업【수업료 감면 · 학비 경감】

내 용	부내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 감면 또는 학비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부(府)가 대상 학생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학교 수업료 등의 학비에 대하여 감면(감액,면제)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학생의 보호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주소가 있고, 교토부내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고있는 학생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타 부현(府県)에 있는 통신제 고등학교는 대상 외		
지급액	(2022 년 3 월 시점)		
	제도명	보호자 소득 기준 (※ 1)	
	수업료면제	생활보호세대	
		연수 590 만엔 미만 세대	
	학비경감	연수 910 만엔 미만세대	전일제
		통신제	
※ 1 연수입은 모델 세대 (양친 · 고등학생 · 중학생의 4 인 가족으로 양친 중 한 쪽만 일하고 있는 경우) 가 기준입니다. ※ 2 보조금액은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국제도) (P.68) 과의 합산액 ※ 3 학비경감세대이자 여러 아이가 부내 고등학교 (전일제만) 에 재적하는 경우, 보조금액에 가산합니다. 【경우에 따른 가산액】 ① 2 인 이상의 아이가 동시에 부내 사립고등학교 (전일제) 에 재적하는 경우 <u>2 만엔 가산</u> ② 2 인 이상의 아이가 동시에 부내 고등학교 (사립 (전일제) / 공립) 에 재적하고, 그 중 어느 한 명이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경우 <u>1 만엔 가산</u>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업료면제는 6 월경, 학비경감은 7~9 월경 구체적 시기는 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교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한 첨부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고등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 · 451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실업·도산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각 사립고등학교에서 수업료 감면 등이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내 용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한 학비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부(府)가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료 등의 학비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당해년 10 월 1 일 현재, 효고현 의 사립 고등학교 (통신제 제외)에 재적하고 있는 분으로, 정부 취학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분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대상 외														
보조액	<table><tr><td>학교소재지</td><td>보호자 소득기준 ※ 1</td><td>보조금액(학생 1 인당 년액)※ 2</td></tr><tr><td rowspan="4">효고현</td><td>생활보호세대</td><td>6,000 엔</td></tr><tr><td>연수 590 만엔미만정도</td><td>6,000 엔</td></tr><tr><td>연수 730 만엔미만정도</td><td>50,000 엔</td></tr><tr><td>연수 910 만엔미만정도</td><td>25,000 엔</td></tr></table> ※1 상기 연수입은 모델세대 기준입니다. 기준액은 재적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학지원금 (정부제도) 공제 후, 납부해야 할 수업료의 년액이 상기보조금을 하회하는 경우, 납부 수업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학교소재지	보호자 소득기준 ※ 1	보조금액(학생 1 인당 년액)※ 2	효고현	생활보호세대	6,000 엔	연수 590 만엔미만정도	6,000 엔	연수 730 만엔미만정도	50,000 엔	연수 910 만엔미만정도	25,000 엔
학교소재지	보호자 소득기준 ※ 1	보조금액(학생 1 인당 년액)※ 2													
효고현	생활보호세대	6,000 엔													
	연수 590 만엔미만정도	6,000 엔													
	연수 730 만엔미만정도	50,000 엔													
	연수 910 만엔미만정도	25,0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구체적인 시기는 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교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재적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075-414-451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P.39~41, P.52~54) 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본 제도 이용에 의해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이 병합조정 (감액)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고등학교 전공과에 재적하는 학생을 위해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고등학교 전공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사립고등학교 등의 전공과에 재적하고 있는 분.
보조액	▶ 친권자의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 6%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의 액(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공제액에 3/4 를 곱한다)이 합하여 51,300 엔 미만 →수업료의 월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1/2 ※상한 17,800 엔(월액) ▶ 친권자의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 6%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의 액(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공제액에 3/4 를 곱한다)이 합하여 100 엔 미만 →수업료의 월액에 상당하는 액수 ※상한 35,600 엔(월액)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상이함.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재적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세표준액 (과세소득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075-414-451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수속이 필요합니다

생활복지자금 대출금 「교육지원자금(교육지원비)」【무이자대출】

내 용 (자금 종류)	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다른 「공적인 교육지원대여 (대출) 제도※」의 대출을 어떠한 이유에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 「공적인 교육지원대여제도」는 다음①,②,③ 제도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P.46~47, P.76~77) ②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P.43~44, P.74)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P.81~82)																																		
대상자	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 1.8 배 이내의 소득수준 세대)의 자녀로서,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중고일관교의 고교), 전수학교(고등과정)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분																																		
대출금액	6 개월을 상한으로 하여, 월단위로 갚습니다. 단위 : 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 rowspan="2">학교종별등</th><th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h></tr> <tr> <th>자택통학</th><th>자택외통학</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등학교등</td><td>국공립</td><td>1 년 ~ 3 년</td><td>18,000</td><td>23,000</td></tr> <tr> <td>사 립</td><td>1 년 ~ 3 년</td><td>30,000</td><td>35,000</td></tr> <tr> <td rowspan="4">고등전문학교</td><td rowspan="2">국공립</td><td>1 년 ~ 3 년</td><td>21,000</td><td>22,500</td></tr> <tr> <td>4 년 ~ 5 년</td><td>44,000</td><td>50,000</td></tr> <tr> <td rowspan="2">사 립</td><td>1 년 ~ 3 년</td><td>32,000</td><td>35,000</td></tr> <tr> <td>4 년 ~ 5 년</td><td>52,000</td><td>59,000</td></tr> </tbody> </table>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대출한도액×1.5 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써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분대출의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P.6)의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학교종별등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고등학교등	국공립	1 년 ~ 3 년	18,000	23,000	사 립	1 년 ~ 3 년	30,000	35,000	고등전문학교	국공립	1 년 ~ 3 년	21,000	22,500	4 년 ~ 5 년	44,000	50,000	사 립	1 년 ~ 3 년	32,000	35,000	4 년 ~ 5 년	52,000	59,000
학교종별등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고등학교등	국공립	1 년 ~ 3 년	18,000	23,000																															
	사 립	1 년 ~ 3 년	30,000	35,000																															
고등전문학교	국공립	1 년 ~ 3 년	21,000	22,500																															
		4 년 ~ 5 년	44,000	50,000																															
	사 립	1 년 ~ 3 년	32,000	35,000																															
		4 년 ~ 5 년	52,000	59,000																															
신청 (상담) 시기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환시기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 배 이내 특별분의 대출을 받은 경우는, 졸업 후 3 개월 이내의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4 배 이내 (단 최장은 20 년으로 함)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수학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교토시를 제외함)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에 수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 자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아래의 비교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액	○수학자금 월액한도액 단위 : 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학년별</th><th>1 학년</th><th>2 학년</th><th>3 학년</th><th>4 학년</th><th>5 학년</th></tr> <tr> <th colspan="3">학교등종별</th><th></th><th></th><th></th><th></th><th></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27,000</td><td>27,000</td><td>27,000</td><td></td><td></td></tr> <tr> <td>자택외통학</td><td>34,500</td><td>34,500</td><td>34,500</td><td></td><td></td></tr> <tr> <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45,000</td><td>45,000</td><td>45,000</td><td></td><td></td></tr> <tr> <td>자택외통학</td><td>52,500</td><td>52,500</td><td>52,500</td><td></td><td></td></tr> <tr> <td rowspan="4">학 고 교 등 전 문</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31,500</td><td>31,500</td><td>31,500</td><td>67,500</td><td>67,500</td></tr> <tr> <td>자택외통학</td><td>33,750</td><td>33,750</td><td>33,750</td><td>76,500</td><td>76,500</td></tr> <tr> <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48,000</td><td>48,000</td><td>48,000</td><td>98,500</td><td>98,500</td></tr> <tr> <td>자택외통학</td><td>52,500</td><td>52,500</td><td>52,500</td><td>115,000</td><td>115,000</td></tr> </tbody> </table>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학교등종별								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	국공립	자택통학	27,000	27,000	27,000			자택외통학	34,500	34,500	34,500			사 립	자택통학	45,000	45,000	45,0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학 고 교 등 전 문	국공립	자택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 립	자택통학	48,000	48,000	48,000	98,500	98,5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115,000	115,000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학교등종별																																																																													
고 전 등 수 학 학 교 교	국공립	자택통학	27,000	27,000	27,000																																																																								
		자택외통학	34,500	34,500	34,500																																																																								
	사 립	자택통학	45,000	45,000	45,0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학 고 교 등 전 문	국공립	자택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 립	자택통학	48,000	48,000	48,000	98,500	98,5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115,000	115,000																																																																						
신청 (상 담) 시기 대출시기	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역 부(府)보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결정 후, 차용서 제출이 확인되면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⑧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 세대전원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⑦ 학교안내서 혹은 학비납입 통지서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 ~ ③과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 수학준비금) 대출 (P.46~49, P.76~79) ②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 대출 (P.42, P.73)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 (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개호복지사의 양성과정을 가진 고등학교에 재적하고 있으며 장래 개호복지사로서 교토부내의 개호시설에서 취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수학준비금이나 개호실습비 등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가진 고등학교에 재적하여 졸업 후, 교토부내의 개호시설에 개호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
대출액	1 수학준비금 30,000 엔이내 (입학연도에 1 회) 2 개호실습비 30,000 엔이내 (1 년도마다) 3 국가시험수험대책비용 40,000 엔이내 (1 년도마다) 4 취직준비금 200,000 엔이내 (졸업연도에 1 회)
신청시기	매년 4 ~ 5 월
지급시기	연 1 회 4 월 경 (입학연도는 6 월경 ・ 취직준비금은 졸업연도의 11 월경)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 연대보증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분)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문의처	교토부사회복지협의회 (T E L 075-252-6292) 로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1 년 이내에 개호복지사로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개호시설에서 개호복지사로서 개호 업무에 3 년간 종사한 경우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여제도	2 수학지원 특별융자이자 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여제도」의 소득 기준액을 초과한 분이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급되어진 이자 금액을 교토부가 보급(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년분을 일괄 교토부에서 보급합니다.
대상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있는 학생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④) 에 재학하고있는 학생의 보호자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여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수가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 이하의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또는 융자액	국공립 월액 18,000 엔 이내 사립 월액 30,000 엔 이내 ※자택외 통학은 5,000 엔 가산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그 지급액에 따라 대출액의 감액조정을 행합니다.	국공립 일괄 (3 년분) 648,000 엔 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 엔 이내 사립 일괄 (3 년분) 1,080,000 엔 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 엔 이내
신청 시기	【신입생】입학후 5 월중순까지 이후, 수시 【재학생】수시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대상)	【신입생】입학후 5 월 중순까지 【재학생】5 월 중순까지

신청 수속 및 급부 시기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소득에 관한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내서」는 학교에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①~③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대여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대여결정통지를 교부 ③ 대출 (송금)	▶다음①~⑦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신청자격인정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 ③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8 월말) ④ 금융기관이 심사후 용자결정 ⑤ 용자 ⑥ 지급되어진 1 년분의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 (익년 6 월) ⑦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대출 또는 용자액	부(府)에서 년 2 회에 나누어 계좌이체 <table><tr><th>구분</th><th>납입기간</th></tr><tr><td>4 월분~9 월분</td><td>6 월말~7 월말 2 년째 이후는 4 월</td></tr><tr><td>10 월분~3 월분</td><td>10 월말</td></tr></table>	구분	납입기간	4 월분~9 월분	6 월말~7 월말 2 년째 이후는 4 월	10 월분~3 월분	10 월말	【신입생】일괄용자 (첫해에 일괄) 또는 분 할용자 (해마다) ,한가지 선택 【재학생】분할용자만 ※ 용자시기는 신청시기 각금융기관에 따 라 상이함
구분	납입기간							
4 월분~9 월분	6 월말~7 월말 2 년째 이후는 4 월							
10 월분~3 월분	10 월말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필요. 보증 (수수) 료는 자기부담						
상환 시기	대출종료후 20 년이내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종료 후 20 년이내)	최초 용자월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진급시에는 계속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종 자금은 다음①~⑩와 같습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대출 (P.43 ~ 44, P.74) ②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5) ③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39~41, P.52~54)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8~59) ⑤ 모자 가정장학금 등 지급 (P.57)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0~61) ⑦ 간호사등 취학자금 대출 (P.102) ⑧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 (P.81~82) ⑨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급부 (P.83~84) ⑩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 생활보호를 수급받고 있는 세대는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P.51)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무소(P.4)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준비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용자(차입)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여제도	2 수학준비금 특별용자이자 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여제도」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분이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 용자를 받은 경우, 지급되어진 이자 금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교토부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 -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1 고등학교 등 수학금 대여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수가 150 만엔 이상의 경우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주 1 :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금) 」 (P.76~77) 의「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여제도」대상자에 한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지도금만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 2 :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또는 용자액	입학 시 1 회 국공립 50,000 엔 정액 사 립 250,000 엔 정액	
신청 시기	입학 후 5 월 중순까지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소득에 관한 증명서등)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신청 수속 및 급부 시기	▶다음①~③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대여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대여결정통지를 교부 ③ 대출 (송금)	▶다음①~⑦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신청자격인정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학교를 통해서) ③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7 월말) ④ 금융기관이 심사후 용자결정 ⑤ 용자 ⑥ 지급되어진 1 년분의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 (익년 6 월) ⑦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대출 · 용 자시기	6 월말 ~ 7 월말	신청시기, 각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함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필요. 보증 (수수) 료는 자기부담
상환 시기	수학금 대출 종료 후, 7 년이내 (상환 유예의 경우, 유예 종료 후 7 년 이 내)	용자월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동종 자금은 다음① ~ ⑦와 같습니다. ①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대출 (P.43~44、 P.74)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입학준비금) 지급 (P.39~41、 P.52~54)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입학준비금) 지급 (P.58~59) ④ 모자가정 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7) ⑤ 생활 복지자금 대출금 (취학준비비) 급부 (P.42、 P.73)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0~61) ⑦ 도도부현(都道府県) · 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 생활보호를 수급받고 있는 세대는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P.51)의 대상 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무소(P.4)와 사전에 상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의 수업료 등 감면

내 용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 전문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합니다.			
대상자	주민세비과세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 (2020 년도 재학생 (이미 입학한 학생을 포함) 이 대상)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급부장학금 (P.83~84) 대상이 된 분은 본 제도의 대상도 됩니다.			
감면액	수업료 등 감면 상한액 (년액) (주민세비과세 세대 학생)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대학	약 280,000 엔	약 540,000 엔	약 260,000 엔 약 700,000 엔
	단기대학	약 170,000 엔	약 390,000 엔	약 250,000 엔 약 620,000 엔
	고등전문학교	약 80,000 엔	약 230,000 엔	약 130,000 엔 약 700,000 엔
	전문학교	약 70,000 엔	약 170,000 엔	약 160,000 엔 약 590,000 엔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학생은, 상기 감면액의 2 / 3 또는 1 / 3 의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대학 등에 진학 후 4 월경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	학교에 감면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감면인정결과 통지가 있을 후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통학예정인(재학중인) 대학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문부과학성 홈페이지<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 URL:https://www.mext.go.jp/kyufu/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여】

내용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출합니다. ▶학력・가계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재학채용】 고등전문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 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					
대여액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1 년 ~ 3 년)					
	학교종별	국・공립		사 립		※학교종별・통학형태 관계없음
	연차 \ 통학	자택	자택외	자택	자택외	
	1 年 ~ 3 年	21,000 엔	22,500 엔	32,000 엔	35,000 엔	
	(4 년 ~ 5 년)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분은 각 구분에서 가장 높은 대여 월액 이외의 금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색이 칠해진 부분).					
	학교종별	국・공립		사 립		
	연차 \ 통학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4・5 年	45,000	51,000	53,000	60,000	
		30,000	40,000	40,000	5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원칙상 매월 계좌 이체됩니다.					
○제 2 종 장학금(유이자)						
학교종별	대여 월액					
	국・공・사립 / 자택・자택외통학 공통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					
▶원칙상 매월 계좌 이체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 시기		구 분	신청시기	첫회 예좌이체일
		재학채용 (입학후 신청)	입학후 봄 (상세 시기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 에 확인 해 주세요.)	6 월 ~ 8 월 경
▶원칙상 매월 계좌 이체됩니다.				
신청수속	인터넷 신청 (스카라넷) 필요서류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 발급 후 신청 입력을 하여 주십시오. ※신청 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증 제도	「인적보증」또는 「기관보증」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인적보증 선택 . . . 연대보증인과 보증인 각 1 명 필요 ②기관보증 선택 . . . 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불필요 보증료는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에서 차감합니다.			
반환 기간	대여종료 후 익월부터 7 개월째 되는 달부터 반환을 시작합니다. 제 1 종 장학금은 다음 ①、②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제 2 종 장학금은 ①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① 정액반환방식 : 대여총액에 의해 반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대 20 년) ② 소득연동반환방식 : 전년도 소득과 연동해서 반환월액이 정해지고, 반환 기간은 반환 월액 에 의해 정해집니다.			
문의처	재학중인 고등전문학교			
비 고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대여장학금(변제 필요)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taiyo/index.html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내 용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이 매우 곤란한 학생에 대해 진학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장학금을 교부합니다.												
대상자	【예약채용】 고등전문학교 3 학년에서 4 학년으로 진급 예정이며 학교의 추천을 받은 분 중,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 ※진학 후에도 재학채용이 있습니다. [전형기준] 가계 : 주민세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일 것. 학력 : 신청 시점에 이하 어느 한 쪽에 해당할 것. (1)고등전문학교에서 평점 평균치가 3.5 이상일 것. (2)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일 것.												
급부액	진학처의 학교설치자(국립, 공립, 사립) 및 통학형태(자택, 자택 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설치자</th><th colspan="2">급부 월액</th></tr> <tr> <th>자택통학</th><th>자택외통학</th></tr> </thead> <tbody> <tr> <td>국공립</td><td>17,500 엔 (25,800 엔)</td><td>34,200 엔</td></tr> <tr> <td>사립</td><td>26,700 엔 (35,000 엔)</td><td>43,300 엔</td></tr> </tbody> </table> ※생활보호세대이며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안의 금액이 됩니다.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세대인 경우, 표 내용의 2 / 3 또는 1 / 3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설치자	급부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국공립	17,500 엔 (25,800 엔)	34,200 엔	사립	26,700 엔 (35,000 엔)	43,300 엔
설치자	급부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국공립	17,500 엔 (25,800 엔)	34,200 엔											
사립	26,700 엔 (35,000 엔)	43,300 엔											
신청시기	고등전문학교 3 학년 봄												
지급시기	진학후에 행하는 소정의 수속 완료 후												
신청수속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스카라넷)입니다. 필요서류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 입력해주십시오. ※신청 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재학중인 고등전문학교												

비고	▶ 재학하는 고등전문학교가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진급 후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요. ▶ 급부장학금과 대여자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급부장학금과 대여자장학금 중 제 1 종(무이자)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제 1 종 장학금의 대여자월액이 제한됩니다. ▶ 이 급부장학금에 채용된 분은, 학교가 실시하는 수업료 감면 (P.80)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진급 후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급부장학금 (변제 불필요)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kyufu/index.html
----	---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 보호법에 의한「진학준비 급부금」【지급】

내 용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아이가 대학등(특정 교육 훈련 시설)에 진학 할 때, 신생활 시작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18 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 월 31 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아이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로 특정 교육 훈련 시설에 진학하는 분 ※특정교육훈련시설 ① 대학 (단기대학을 포함) ②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한함) ③ 직업능력 개발 종합대학교의 종합과정,직업능력 개발 대학교 및 직업능력 개발단기 대학교의 전문과정 ④ 수산대학교 ⑤ 해상기술 단기대학교 및 해기대학교 ⑥ 국립 간호 대학교 ⑦ 전수학교(일반과정에 한함)및 각종 학교 중 ,복지사무소가(수입등에 의해 자립가능한 전망이 있다고)판단 하는 곳
지급액	자택통학 : 100,000 엔 자택외통학 : 300,000 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사무소에 제출 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자금의 종류)	1 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대학등에 취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공적 교육지원대여 제도※1」의 차입이 가능할 때까지 「츠나기자금※2」에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1 「공적 교육지원대여제도」는 다음①,②제도 입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P.88~89) ②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무이자대여・급부) (P.91~94) ※2 「츠나기 자금」은 ※1 의①,②는 대출이 4 월이후 진행되는 점에서 납입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비는①,② 어느 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까지 「츠나기 자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①,② 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으로써, 입학년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합니다. 【①,②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츠나기자금」이 아닌, 계속 대출해드립니다. 또한, ②의 대출만으로는 학비 납입이 부족한 경우 덧붙여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필요) 2 취학준비비 : 대학,단기대학,전문학교(전문과정) 입학 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 배 이내 소득수준세대)의 자녀로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전문과정)에 취학하는 분																				
대출금액	1 교육지원비 : 6 개월 상한으로 월단위로 빌려드립니다. 단위 : 엔 <table><tr><th colspan="2" rowspan="2">대학종별</th><th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h></tr><tr><th>자택통학</th><th>자택외통학</th></tr><tr><td rowspan="2">대학</td><td>국공립</td><td>45,000</td><td>51,000</td></tr><tr><td>사 립</td><td>54,000</td><td>64,000</td></tr><tr><td rowspan="2">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td><td>국공립</td><td>45,000</td><td>51,000</td></tr><tr><td>사 립</td><td>53,000</td><td>60,000</td></tr></table>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기 대출한도액×1.5 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분대출에서의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p.6)의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2 취학준비금 : 학교종별등에 관계없이 500,000 엔 이내	대학종별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대학	국공립	45,000	51,000	사 립	54,000	64,000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45,000	51,000	사 립	53,000	60,000
대학종별				대출한도액 (월액)																	
		자택통학	자택외통학																		
대학	국공립	45,000	51,000																		
	사 립	54,000	64,000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45,000	51,000																		
	사 립	53,000	60,000																		
신청 (상담) 시기	※지망학교를 결정하고, 입학 팜플렛등에서 입학에 필요한 경비가 확인되는 시점 (고등학교 3 학년 가을쯤부터) 에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환기간	1 교육지원비 : 「츠나기자금」은 원칙으로써, 입학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그외는 졸업 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 배이내 (특별분은 4 배 이내 (단 최대 20 년으로 함)) (P.73 과 같음) 2 취학준비비 :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8 년 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5) 로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의 자녀가 대학 등에 수학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입학금,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년도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 또는 일반과정)에 진학할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의 자금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종의 자금은 비교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 2020 년 4 월부터 개시된 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고등교육의 수업료등 감면(P.90),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급부)(p.93~9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의 한도액에서 신제도에 따른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한도액이 됩니다.							
대출액	○수학자금 월액한도액 단위 : 엔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자택 통학	67,500	67,500			
			자택외 통학	78,000	78,000			
		사 립	자택 통학	89,000	89,000			
			자택외 통학	126,500	126,500			
	단기대학	국공립	자택 통학	67,500	67,500			
			자택외 통학	96,500	96,500			
		사 립	자택 통학	93,500	93,500			
			자택외 통학	131,000	131,000			
	대학	국공립	자택 통학	71,000	71,000	71,000	71,000	
			자택외 통학	108,500	108,500	108,500	108,500	
		사 립	자택 통학	108,500	108,500	108,500	108,500	
			자택외 통학	146,000	146,000	146,000	146,000	
	전수학교 (일반과정)	학교종별 · 통학형태에 관계없음		49,500	49,500			
	대학원	석사과정		132,000	132,000			
		박사과정		183,000	183,000	183,000		
○ 취학준비자금 한도액 단위 : 엔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입학	국공립	자택통학	410,000					
		자택외통학	420,000					
	사 립	자택통학	580,000					
		자택외통학	590,000					
전수학교 (일반과정) 입학		자택통학	150,000					
		자택외통학	160,000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에 입학	국공립	380,000						
	사 립	590,000						

신청(상 담)시기	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역 부(府)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의 증명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의 부(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증빙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수학자금인 경우) 합격통지서 (취학지도자금인 경우) ⑦ 학교안내서 혹은 납입통지서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②와 같습니다. ①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 대출 (P.73) ②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 (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수업료 등 감면

내 용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 전문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합니다.			
대상자	주민세비과세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 (2020 년도 재학생 (이미 입학한 학생을 포함) 이 대상)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급부장학금 (P.93~94) 대상이 된 분은 본 제도의 대상도 됩니다.			
감면액	수업료 등 감면 상한액 (년액) (주민세비과세 세대 학생)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대학	약 280,000 엔	약 540,000 엔	약 260,000 엔 약 700,000 엔
	단기대학	약 170,000 엔	약 390,000 엔	약 250,000 엔 약 620,000 엔
	고등전문학교	약 80,000 엔	약 230,000 엔	약 130,000 엔 약 700,000 엔
	전문학교	약 70,000 엔	약 170,000 엔	약 160,000 엔 약 590,000 엔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학생은, 상기 감면액의 2 / 3 또는 1 / 3 의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대학 등에 진학 후 4 월경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	학교에 감면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감면인정결과 통지가 있을 후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통학예정인(재학중인) 대학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문부과학성 홈페이지<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 URL:https://www.mext.go.jp/kyufu/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대여】

내 용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학생·생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여(대출)합니다. ○ 장학금 종류 1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 . . 학력기준 (고등학교 성적 3.5 이상 등) , 가계기준등을 충족하는 분 2 제 2 종 장학금 (유이자) . . . 학력기준,가계기준(제 1 종장학금 보다 완화)을 충족하는 분 → 상기 1 또는 2 의 대여를 신청하시는 분만 대상 (입학 일시금으로) 3 입학시 특별증액대여 장학금 (유이자) . . . 일본정책금융공고「국가 교육론」를 이용할수 없는 분 등 ※2022 년도 생계유지자의 주민세(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비과세, 생활보호 수급세대, 아동 양호 시설등의 입소자 중 어느한 것에 속하며 진학후에도 뛰어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면 학력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상자	【예약채용】 대학 (학부) ,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 ※진학 후에도 재학채용이 있습니다.																																																		
대여액	1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분은 각 구분에서 가장 높은 대여 월액 이외의 금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굵은 외곽선 부분). <table><tr><th rowspan="2">진학처</th><th colspan="2">국 · 공립</th><th colspan="2">사 립</th></tr><tr><th>자택통학</th><th>자택 외 통학</th><th>자택통학</th><th>자택 외 통학</th></tr><tr><td rowspan="5">대학</td><td rowspan="2">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tr><td>40,000</td><td>40,000</td><td>50,000</td></tr><tr><td rowspan="2">30,000</td><td>30,000</td><td>30,000</td><td>40,000</td></tr><tr><td>20,000</td><td>20,000</td><td>30,000</td><td>20,000</td></tr><tr><td rowspan="4">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tr><td rowspan="2">30,000</td><td>40,000</td><td>40,000</td><td>50,000</td></tr><tr><td>30,000</td><td>30,000</td><td>40,000</td><td>30,000</td></tr><tr><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table> •원칙상 매월 계좌 이체됩니다. ○제 2 종 장학금 (유이자) <table><tr><th rowspan="2">진학처</th><th>대여 월액</th></tr><tr><th>국 · 공 · 사립 / 자택 · 자택 외 통학 공통</th></tr><tr><td>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td><td>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td></tr></table> •원칙상 매월 계좌 이체됩니다.				진학처	국 · 공립		사 립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45,000	51,000	54,000	64,000	40,000	40,000	50,000	30,000	30,000	30,000	40,000	20,000	20,000	30,000	20,000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45,000	51,000	53,000	60,000	30,000	40,000	40,000	50,000	30,000	30,000	4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진학처	대여 월액	국 · 공 · 사립 / 자택 · 자택 외 통학 공통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
진학처	국 · 공립		사 립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45,000	51,000	54,000	64,000																																															
		40,000	40,000	50,000																																															
	30,000	30,000	30,000	40,000																																															
		20,000	20,000	30,000	20,000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45,000	51,000	53,000	60,000																																														
30,000		40,000	40,000	50,000																																															
		30,000	30,000	4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진학처	대여 월액																																																		
	국 · 공 · 사립 / 자택 · 자택 외 통학 공통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																																																		

	3 입학시 특별증액대여 장학금			
	학교종별	입학시 특별증액 대여액		
		국 · 공립 / 자택 · 자택외 통학 공통		
	대 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 전수학교(전문과정)	100,000 엔 중 선택	200,000 엔	300,000 엔 400,000 엔 500,000 엔
• 제 1 종 장학금 또는 제 2 종 장학금의 첫 회 계좌이체시, 병합하여 이체 ※ 4 · 5 년차 편입시 혹은 전공과 입학시만. 제 1 종 장학금 또는 제 2 종 장학금 신청자가 대상. 입학시 특별증액대여 장학금 만의 신청은 불가				
신청 시기 및 대여 시기		장학금구분	신청 (모집) 시기	대여 시기
	예약채용 (입학전 신청)	제 1 종 장학금 제 2 종 장학금 입학시특별증액대여 장학금	고교 3 학년 봄 (자세한 시기는 학교에 확인해주세요.)	진학 후의 4~6 월 경
신청수속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스카라넷)입니다. 필요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 입력해주시요. ※신청 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증제도	「인적보증」또는 「기관보증」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인적보증 선택 · · · 연대보증인과 보증인 각 1 명 필요 ② 기관보증 선택 · · · 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불필요 보증료는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에서 차감합니다.			
반환 시기	대여 종료 후, 7 개월째 되는 달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제 1 종 장학금은 다음 ①、②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제 2 종 장학금은 ①의 방식으로 반환 됩니다. ① 정액반환방식 : 대여 총액에 의해 반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대 20 년) ② 소득연동반환방식 : 전년도 소득과 연동해서 반환월액이 정해지고, 반환 기간은 반 환 월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문의처	【예약채용】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전수학교 (고등과정)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 (전문과정) , 고등전문학교			
비 고	▶대학원은 별도기준이 있습니다. ▶예약채용을 하신 분은 통학처의 학교에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예약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수학교(전문과정)에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을 취급하지 않는(기구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음) 경우가 있습니다.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일본학생지 원기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대여장학금(변제 필요) URL: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taiyo/index.html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내 용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이 매우 곤란한 학생 · 생도에게 진학을 후원할 목적으로써 반환 필요가 없는 급부장학금을 교부합니다.																					
대상자	【예약채용】 고등전문학교 3 학년에서 4 학년으로 진급 예정이며,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자 ※진학 후에도 재학채용이 있습니다. (전형기준) 가계 : 주민세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일 것. 학력 : 신청 시점에 이하 어느 한 쪽에 해당할 것. (1)고등전문학교에서의 평점 평균치가 3.5 이상일 것. (2)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일 것.																					
급부액	진학처의 학교설치자(국립, 공립, 사립) 및 통학형태(자택, 자택 외)에 따라 다릅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41 1003 1177 1272"> <thead> <tr> <th rowspan="2">설치자</th><th colspan="2">급부 월액</th></tr> <tr> <th>자택통학</th><th>자택 외 통학</th></tr> </thead> <tbody> <tr> <td>국공립</td><td>29,200 엔 (33,300 엔)</td><td>66,700 엔</td></tr> <tr> <td>사립</td><td>38,300 엔 (42,500 엔)</td><td>75,800 엔</td></tr> </tbody> </table> 【통신교육과정】 <table border="1" data-bbox="341 1388 1177 1653"> <thead> <tr> <th rowspan="2">설치자</th><th colspan="2">급부액</th></tr> <tr> <th>자택통학</th><th>자택 외 통학</th></tr> </thead> <tbody> <tr> <td>국공립</td><td colspan="2" rowspan="2">51,000 엔 (연 1 회 지급)</td></tr> <tr> <td>사립</td></tr> </tbody> </table> ※생활보호세대이며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안의 금액이 됩니다.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세대인 경우, 표의 2/3 혹은 1/3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설치자	급부 월액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국공립	29,200 엔 (33,300 엔)	66,700 엔	사립	38,300 엔 (42,500 엔)	75,800 엔	설치자	급부액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국공립	51,000 엔 (연 1 회 지급)		사립
설치자	급부 월액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국공립	29,200 엔 (33,300 엔)	66,700 엔																				
사립	38,300 엔 (42,500 엔)	75,800 엔																				
설치자	급부액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국공립	51,000 엔 (연 1 회 지급)																					
사립																						
신청시기	예약채용 (진학전 신청) : 고등전문학교 3 학년 봄																					
지급시기	예약채용 (진학전 신청) : 진학후에 행하는 소정의 수속 완료 후																					

신청수속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스카라넷)입니다. 필요서류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 입력해주시오. ※신청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재학중인 고등학교 및 전수학교(고등과정) 등
비 고	▶진학하는 학교가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진학처인 학교에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오. ▶급부형 장학금과 대여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급부장학금과 대여장학금 중 제 1 종(무이자)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제 1 종장학금의 대여월액이 제한됩니다. ▶이 급부장학금에 채용된 분은, 진학처가 실시하는 수업료 감면 (P.90)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 수속 또한 진학 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급부장학금 (변제 불필요)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kyufu/index.html

**제 9 편 중학교 ·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포함) 등,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기능습득비)」【지급】

내 용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수학교 등에서 기술을 수득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세대의 자립 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수업료, 교과서・교재 구입비, 통학비 등)를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서, 다음①~②의 시설 중 한 곳에 재학하고있는 분 ① 전수학교 ② 각종학교										
지급액	○생활보호법「생업부조」 <table><tr><td></td><td>내 용</td><td>지급액</td></tr><tr><td rowspan="2">기능습득비</td><td>수업료, 교과서, 교재비, 자격검정 등 비용 (단, 동일 자격검정 등은 1 회 한정) 등</td><td>년 380,000 엔 이내</td></tr><tr><td>통학 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액)</td><td>실비 지급</td></tr></table>				내 용	지급액	기능습득비	수업료, 교과서, 교재비, 자격검정 등 비용 (단, 동일 자격검정 등은 1 회 한정) 등	년 380,000 엔 이내	통학 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액)	실비 지급
	내 용	지급액									
기능습득비	수업료, 교과서, 교재비, 자격검정 등 비용 (단, 동일 자격검정 등은 1 회 한정) 등	년 380,000 엔 이내									
	통학 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액)	실비 지급									
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수속	※ 전수학교 등에서의 입학을 검토하는 경우,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바로 취학하는 경우에는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취업준비비)」【지급】

내 용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준비에 필요한 경비(취업을 위한 의복・신발 구입비 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으로 취업이 확정된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생업부조」		
		내 용	지급액
	취업준비비	취업을 위해 직접 필요한 양복류, 신발 등의 구입비용	32,000 엔 이내
		첫임금이 지급되기까지 통근비 (꼭 필요한 경우)	실비지급
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수속	※ 취업이 확정되면 즉시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4)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1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습득자금 · 입소준비금【지급】

내 용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기능습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에게,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등 졸업 후, 계속하여 기능습득시설(간호사 · 준간호사 양성소를 제외)에 입소하 는 경우, 다음①,②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①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 ②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능습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 (소속세대 총수입이 생활보호기준의 1.8 배 이내) ▶ 생활보호의 기준은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	<table><tr><th colspan="2">시설 종별</th><th>기능습득자금</th><th>입소준비비</th></tr><tr><td>1</td><td>공공취업능력개발시설 (교토후립의 고등기술전문학교 등)</td><td>월액 5,000 엔</td><td rowspan="3">55,000 엔</td></tr><tr><td>2</td><td>실기학교 (전수학교등 · 각종 학교)</td><td>월액 24,000 엔</td></tr><tr><td>3</td><td>고교형태 (고등학교와의 연계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 습득 시설 등)</td><td>월액 21,000 엔</td></tr></table> ※생활보호법에의한 업무조「기능습득비」(P.96) , 「취업준비비」(P.97) 및 「고등교육 의 수업료 등 감면」 (P.90) 등,타 유사 제도의 의한 급부 등을 수급하는 경우 는,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종별		기능습득자금	입소준비비	1	공공취업능력개발시설 (교토후립의 고등기술전문학교 등)	월액 5,000 엔	55,000 엔	2	실기학교 (전수학교등 · 각종 학교)	월액 24,000 엔	3	고교형태 (고등학교와의 연계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 습득 시설 등)	월액 21,000 엔
시설 종별		기능습득자금	입소준비비														
1	공공취업능력개발시설 (교토후립의 고등기술전문학교 등)	월액 5,000 엔	55,000 엔														
2	실기학교 (전수학교등 · 각종 학교)	월액 24,000 엔															
3	고교형태 (고등학교와의 연계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 습득 시설 등)	월액 21,000 엔															
신청시기	▶1 차 신청 . . . 3 월 중순 ▶2 차 신청 . . . 4 월 중순 이후, 수시접수																
지급시기	【기능습득자금】년 3 회로 나누어 지급 제 1 기분 : 4 월 하순 (1 차 신청분) 、 5 월 하순 (2 차 신청분) 제 2 기분 : 8 월상순 제 3 기분 : 12 월상순 수시접수분은, 그때마다 지급합니다. 【입소준비금】4 월에서 6 월 사이에 전액지급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재학(적)증명 및 납입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제출 해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훈련수당 · 입교준비금【지급】

내 용	장애가 있는 분 등이 공공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훈련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이 아닌 훈련과도 있습니다.																						
대상자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구직자로서,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서 수강지시를 받은 분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수당등 종류</th><th>지급액</th><th>내 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훈련수당</td><td colspan="2">기본수당</td><td>월액 3,530 엔~4,310 엔</td></tr> <tr> <td rowspan="2">기능습득수당</td><td>통소수당</td><td>월액 42,500 엔 이내</td></tr> <tr> <td>수강수당</td><td>일액 500 엔 (상한 40 일)</td></tr> <tr> <td colspan="2">기숙수당※</td><td>월액 10,700 엔 이내</td></tr> <tr> <td colspan="2">입교준비금</td><td>35,000 엔</td><td>6 개월이상 훈련을 받는 신규 대졸의 장애인만 지급</td></tr> </tbody> </table> ※ 기숙수당 . . . 생계를 유지해온 분이 생계를 함께 한 동거가족과 떨어져 기숙하며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급			수당등 종류		지급액	내 용	훈련수당	기본수당		월액 3,530 엔~4,310 엔	기능습득수당	통소수당	월액 42,500 엔 이내	수강수당	일액 500 엔 (상한 40 일)	기숙수당※		월액 10,700 엔 이내	입교준비금		35,000 엔	6 개월이상 훈련을 받는 신규 대졸의 장애인만 지급
수당등 종류		지급액	내 용																				
훈련수당	기본수당		월액 3,530 엔~4,310 엔																				
	기능습득수당	통소수당	월액 42,500 엔 이내																				
		수강수당	일액 500 엔 (상한 40 일)																				
	기숙수당※		월액 10,700 엔 이내																				
입교준비금		35,000 엔	6 개월이상 훈련을 받는 신규 대졸의 장애인만 지급																				
신청시기	입교시																						
지급시기	익월 15 일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훈련수강지시서의 사본, 신체장애인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인수첩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시설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시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공공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부내(府) 시설 . . . 각부립고등기술전문교, 폴리텍센터 교토 등 부외(府) 시설 . . . 국립 · 현립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 등																						

장애인 등 직장적응 훈련수당【지급】

내 용	장애가 있는분 등이 직장적응훈련을 받는 기간(상한있음),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장적응훈련은 장애가 있는분 등이 실제 직장에서 작업에 대해 훈련을 하고, 그것에 의해 작업환경과 직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대상자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의 구직자로 공공 직업 안정소 (hello work)에서 수강 지시를 받은 자									
지급액	<table><tr><th colspan="2">훈련 종류 · 훈련기간</th><td rowspan="3">○기본수당 월액 3,530 엔 ~ 4,310 엔 ○기능습득수당 수강수당 월액 500 엔 (상한 40 일) 통소수당 월액 42,500 엔 이내</td></tr><tr><td>1</td><td>일반직장적응훈련 6 개월(중도장애인등은 1 년) 이내</td></tr><tr><td>2</td><td>단기직장적응훈련 2 주간(중도장애인등은 4 주간) 이 내</td></tr></table>			훈련 종류 · 훈련기간		○기본수당 월액 3,530 엔 ~ 4,310 엔 ○기능습득수당 수강수당 월액 500 엔 (상한 40 일) 통소수당 월액 42,500 엔 이내	1	일반직장적응훈련 6 개월(중도장애인등은 1 년) 이내	2	단기직장적응훈련 2 주간(중도장애인등은 4 주간) 이 내
훈련 종류 · 훈련기간		○기본수당 월액 3,530 엔 ~ 4,310 엔 ○기능습득수당 수강수당 월액 500 엔 (상한 40 일) 통소수당 월액 42,500 엔 이내								
1	일반직장적응훈련 6 개월(중도장애인등은 1 년) 이내									
2	단기직장적응훈련 2 주간(중도장애인등은 4 주간) 이 내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1 일반직장적응훈련 . . . 1 개월종료후 2 단기직장적응훈련 . . . 훈련종료후 }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일 다음달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대출금「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취업자금」또는 「취업준비금」이 필요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1 취업자금 · · · 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 득 하기 위한 자금 2 취업준비자금 · · ·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복, 신발 등 복장 정돈을 위한 자금
대출액	1 취업자금 월액 68,000 엔 이내 2 취업준비자금 1 회 당 100,000 엔 이내
신청시기	대출관련 상담은 진로검토시기부터 접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역 부(府)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
상환시기	1 취업자금 지식기술습득부터 1 년경과후 2 취업준비자금 대출일부터 1 년 조치기간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⑧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 해 주십시오.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증명서 ② 세대전원 주민표 (기재사항이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 증빙 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⑦ 시설안내서 혹은 납입통지서 등 이수 연한이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교 3 학년생이 자동차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취직 내정서와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장이 증명하는 서류) ⑧ 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2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간호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중이며, 장래 교토부내의 의료기관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및 준간호사의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으로, 양성시설을 졸업 후 1 년이내 간호사등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교토부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의 업무에 종사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 ※다른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출액	과 정	국 · 공립양성시설재학생	사립양성시설재학생
	보건사 · 조산사 · 간호사 (5 년일관 4 , 5 학년)	월액 32,000 엔	월액 36,000 엔
	준간호사 (5 년일관 1 ~ 3 학년)	월액 15,000 엔	월액 21,000 엔
신청시기	매년 4 월 ~ 5 월		
대출시기	년 4 회 (7 월, 9 월, 12 월, 3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① ~ ③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 교토부외의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재학증명서 겸 추천서 ② 소득증명서등의 제출서약서 겸 소득 · 재산조사등 동의서 ③ 교토부 간호사등 수학자금 신청조서 용지는 부(府)내 양성시설 또는 교토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상환기간	일괄상환 혹은 대출기간 내 분할상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의료과 (Tel075-414-4746 또는 47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사 등의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교토부내 반환면제대상시설※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5 년간 간호사 등으로서 종사한 경우 ※반환면제대상시설 (2022.3.31 시점※취직 시점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토부 북부지역(아야베시 이북)의 전 병원, 교토부내의 병상이 200 개 미만인 병원, 교토부내의 정신병상이 전체의 80% 이상인 병원, 교토부내의 전 진료소, 중도 심신장애아 시설, 구 국립진료소, 소개노인보건시설. 방문 간호 사업소간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의료원
-----	--

간호복지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간호복지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입학하려고) 하고 있고, 장래, 교토부내의 복지 시설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 등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정양성시설에 재학 (입학) 하여, 졸업 후, 교토부 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타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대출액	1 수학자금 월액 50,000 엔 2 입학준비금 200,000 엔 3 취직준비금 200,000 엔 (일하면서 취학하는 분은 제외) 4 국가시험 수험 대책비용 1 년 당 40,000 엔 (간호복지사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에 한함) 생활보호수급세대 등인 분에게는 상가의 대출액에 별도의 생활비 가산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매년 4 월 ~ 5 월
대출시기	년 2 회 (4 월, 10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①~④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수급세대의 고등학생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 됩니다.) ① 학교성적증명서 ②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③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것 ④ 그 외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인 분은,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TEL 075-252-6292) 에 문의해 주세요.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상환기간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075-252-6292)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5 년간 종사한 경우

보육사 수학 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간호복지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입학하려고) 하고 있고, 장래,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 등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정양성시설에 재학 (입학) 하여, 졸업 후,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타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대출액	1 수학자금 월액 50,000 엔 2 입학준비금 200,000 엔 3 취직준비금 200,000 엔 (일하면서 취학하는 분은 제외) 생활보호수급세대 등인 분에게는 상기의 대출액에 별도의 생활비 가산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양성시설 입학 후 (자세한 사항은 각 양성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급시기	연간 2 회 (4 월, 10 월) (초년도인 1 회째는 6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①~④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수급세대의 고등학생 등이 입학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 됩니다.) ① 학교성적증명서 ②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③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④ 그 외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인 분은,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TEL075-252-6292) 에 문의해 주세요.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075-252-6292)로 문의해 주세요.
비 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5~10 년간 종사한 경우

참고자료

아동수당【지급】

내 용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께 지급합니다.												
대상자	중학교 졸업 전 (15 세 생일 후의 첫 3 월 31 일까지) 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지급액	양육자의 소득 및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소득제한한도액 미만인 분 <table border="1"> <thead> <tr> <th>자녀 연령</th><th>아동수당 금액 (1 인당 월액)</th></tr> </thead> <tbody> <tr> <td>0 세~3 세 미만 (일률)</td><td>15,000 엔</td></tr> <tr> <td>3 세 ~ 소학교 수료 전</td><td></td></tr> <tr> <td>제 1 자(第 1 子)・제 2 자(第 2 子)※</td><td>10,000 엔</td></tr> <tr> <td>제 3 자(第 3 子) 이후※</td><td>15,000 엔</td></tr> <tr> <td>중학생 (일률)</td><td>10,000 엔</td></tr> </tbody> </table> ※「제 3 자(第 3 子) 이후」는 고교졸업까지 (18 세 생일 후의 첫 3 월 31 일까지)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득제한한도액 이상, 소득상한한도액 미만인 분 자녀 1 인당 월액 5,000 엔 (일률) ○소득상한한도액 이상인 분 2022 년 10 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	아동수당 금액 (1 인당 월액)	0 세~3 세 미만 (일률)	15,000 엔	3 세 ~ 소학교 수료 전		제 1 자(第 1 子)・제 2 자(第 2 子)※	10,000 엔	제 3 자(第 3 子) 이후※	15,000 엔	중학생 (일률)	10,000 엔
자녀 연령	아동수당 금액 (1 인당 월액)												
0 세~3 세 미만 (일률)	15,000 엔												
3 세 ~ 소학교 수료 전													
제 1 자(第 1 子)・제 2 자(第 2 子)※	10,000 엔												
제 3 자(第 3 子) 이후※	15,000 엔												
중학생 (일률)	10,000 엔												
신청시기	수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부모가 되었을 때 등)												
지급시기	6 월(2~5 월분), 10 월(6~9 월분), 2 월(10 월~1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원칙적으로, 자녀가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학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부모가 이혼 협의 중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자녀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3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을 지정하면, 그 분(부모지정자)에게 지급합니다. 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5 자녀분이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 혹은 수양부모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자 혹은 수양부모에게 지급합니다.
-----	--

아동부양수당【지급】

내 용	편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국민 연금의 1 급 장애 정도의 중증 장애 상태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생활의 안정과 자립의 촉진을 위해, 자녀의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편부모 가정의 자녀 (18 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감호 · 양육하고 있는 분 ※ 자녀에게 중도 이상(中度、重度)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 세 미만까지
지급액	감호 ·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월액 10,160 엔 ~ 월액 43,070 엔 둘째 자녀는 월액 5,090 엔 ~ 10,170 엔 가산, 셋째 자녀 이후에는 월액 3,050 ~ 6,100 엔 가산 (2022 년 4 월 1 일 현재. 물가변동에 의해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5 월(3,4 월분), 7 월(5,6 월분), 9 월(7,8 월분), 11 월(9,10 월분), 1 월(11,12 월분) , 3 월(1, 2 월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특별 아동부양수당【지급】

내 용	신체 또는 정신에 중정도(中程度)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감호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중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감호하고 있는 분
지급액	1 급 : 월액 52,400 엔 2 급 : 월액 34,900 엔 (2022 년 4 월 1 일 현재. 물가변동에 의해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호·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에 따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녀분의 장애와 관련하여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입소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8 월(4~7 월분), 12 월(8~11 월분), 4 월(12 월~3 월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중증 장애로 인해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20 세 미만인 분을 위한 제도

장애아 복지수당【지급】

내 용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대상자	20 세 미만인 분으로, 별표의 어느 쪽에라도 해당하는 분 ①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 ②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아 입소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분 ③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의무자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분 〈별표〉 1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분 2 양쪽 귀의 청력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소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 3 양 팔의 기능에 두드러진 장애를 갖고 있는 분 4 양 손의 모든 손가락이 없는 분 5 양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 6 양쪽 대퇴(넓적다리)의 2 분의 1 이상을 잃으신 분 7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 8 1~7 번의 내용 이외에, 신체 기능의 장애 및 장기간에 걸친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세가 1~7 번의 내용과 동정도(同程度)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분 9 정신장애로, 1~8 번의 내용과 동정도(同程度)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분 10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병세 혹은 정신 장애가 중복된 경우로, 그 상태가 1~9 번의 내용과 동정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분								
지급액	월액 14,850 엔 (지급액은 물가변동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2 월(11~1 월분), 5 월(2~4 월분), 8 월(5~7 월분), 11 월(8 월~10 월분)								
신청수속	인정(認定) 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신청창구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용지는 아래의 신청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신청창구</td><td>교토시 거주자</td><td>구약소(출장소) 복지사무소</td></tr> <tr> <td>그 외 지역 거주자</td><td>시약소</td></tr> <tr> <td>정촌(町村) 거주자</td><td>정촌약소(町村役場)</td></tr> </table>		신청창구	교토시 거주자	구약소(출장소) 복지사무소	그 외 지역 거주자	시약소	정촌(町村) 거주자	정촌약소(町村役場)
신청창구	교토시 거주자	구약소(출장소) 복지사무소							
	그 외 지역 거주자	시약소							
	정촌(町村) 거주자	정촌약소(町村役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시·구(정촌(町村))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소관의 부(府)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부모 가정인 분을 위한 제도

모자 복지단체 소액 대출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세대 및 과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교토부 모자·과부복지연합회가 각 지회에 있어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소액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는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및 과부
지급액	○ 생활자금 한도액 50,000 엔 ○ 취학자금 한도액 50,000 엔 ○ 주택자금 한도액 50,000 엔
대출시기	수시
대출수속	거주 중인 지역의 교토부 모자·과부연합회의 지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교토부 모자·과부복지연합회 (TEL 075-223-136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 고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급부금【지급】

내 용	모자가정의 모친 혹은 부자가정의 부친의 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자격에 관련된 양성훈련 수강기간에 대해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모친 혹은 부자가정의 부친이며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시는 분 ①아동부양수당 지급을 받고 있거나, 혹은 동등한 소득수준일 것. ②대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양성기관에서 6 월 이상의 커리큘럼을 수업하고, 대상 자격 취득이 기대되는 자일 것. ③취업 혹은 육아와 수업의 양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과거에 급부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	○훈련 촉진 급부금 월액 비과세세대 100,000 엔 과세세대 70,500 엔 ※수학기간의 마지막 1 년간 비과세세대 140,000 엔 과세세대 110,500 엔 ○수료지원급부금 양성기관수료후 비과세세대 50,000 엔 과세세대 25,000 엔
신청시기	○훈련촉진급부금 양성기관에서 수업을 개시한 일 이후 수시 ○수료지원급부금 수료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30 일 이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중인 지역의 부보건소 (P.2) 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지급대상자 및 부양하고있는 아동의 호적등본 혹은 초본 및 이들이 소속된 세대 전원의 주민표 사본 ②아동 부양수당의 사본 혹은 전년도 소득액 등에 대해 시구정촌장 증명서 ③훈련촉진급부금...입교 (입소) 증명서 수료지원급부금...수료증명서 사본
문의처	시에 거주중인 분은 각 시청 편부모가정 지원기관담당과에, 정촌에 거주중인 분은 각 보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자금대출【무이자대출】

	훈련촉진자금대출	주택지원자금대출
내 용	고등직업훈련 촉진금부금을 활용하여 양성기관에 재학하고, 취직시 유리한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편부모가정 양친에 대해 대출하여 취학을 용이하게 함을 통해 자격 취득을 촉진합니다.	자립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임하는 편부모가정의 양친에 대해 대출하여 편부모가정 양친의 자립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	고등직업훈련 촉진금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자립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임하는 분 중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분 · 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받고 있거나 동등한 소득수준인 분 · 모자 · 부자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책정을 받고 있는 분
대출액	입학준비금 : 500,000 엔 이내 취직준비금 : 200,000 엔 이내	월액 40,000 엔 이내 ※대출기간은 원칙 12 개월 이내
지급시기	입학준비금 : 대출 결정 후, 차용 증서, 인감등록증명서 제출 후 송금 취직준비금 : 자격취득합격통지서 등의 사본 제출 후 송금	원칙 연 4 회의 분할 교부이며, 지급월의 직전 3 개월분을 지급합니다. 6 월 : 3 ~ 5 월분 9 월 : 6 ~ 8 월분 12 월 : 9 ~ 11 월분 3 월 : 12 ~ 2 월분
대출수속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이하 서류를 첨부한 상태로 주거하시는 지역의 복지사무소 (P.4) 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편부모가정 고등직업훈련 촉진자금대출신청서 ②고등직업훈련 촉진금부금 지급결정통지서 사본 ③연대보증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증명서 ④신청자 및 부양하고 있는 아동의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세대 전원분) ⑤입교(입소)증명서 (수업중인 양성기관장이 증명하는 재적증명서 등)	①편부모가정 고등직업훈련 촉진자금 주택지원자금 대출신청서 ②모자 · 부자 자립지원프로그램 책정증명서 ③신청자 및 부양하고있는 아동의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세대 전원분) ④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칙상 본인 명의로 한함.) ⑤연대보증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는 경우)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TEL : 075-252-6293)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 본청 담당과

제 1 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7	모가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8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库里추진과 075-414-5076
9	셋째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보조금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91
10	취학장려비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2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일시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13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5	모자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6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库里추진과 075-414-5076
17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 「생활부조(일시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18	취학원조비	교육청 지도부학교교육과 075-414-5831
19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20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21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22	수학여행원조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23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	

제 4 편 중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25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일시부조)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26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28	모가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29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 · 안전 마치즈库里추진과 075-414-5076
30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31	취학원조비	교육청지도부 학교교육과 075-414-5831
32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33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34	가계급변세대에 대한 수업료지원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35	수학여행 원조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36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38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원조)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39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42	생활복지자금 대출금 「교육지원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 · 4556
43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45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75

4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48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준비금)	

제 7 편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5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52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55	장학을 위한 급부금 (고등학생등 장학 급부금)	국공립고교 :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39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57	모자가정 장학금등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58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 · 안전 마치즈库里추진과 075-414-5076
60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62	고등학교 학생통학비 보조금	공립고교 : 교육청지도부고교교육과 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문교과 075-414-4517
64	정시제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과정 교과서 · 학습서 보조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6
65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공립고교 : 교육청지도부고교교육과 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7
66	공립고교 취학지원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6
68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69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사업	
71	효고현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7
72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8

73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 (교육지원비)」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 · 4556
74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75	복지계고등학교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75
7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78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준비금)	
80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414-5849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86	생활보호제도에 의한「진학준비급부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87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 · 4556
88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취학준비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90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414-5849

제 9 편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96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기능습득비)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 · 4558
97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취업준비비) 」	
98	기능습득자금 · 입소준비금	
99	훈련수당 · 입소준비금	상공노동관광부 인재개발추진과 075-414-5101
100	장애인등 직장적응훈련수당	상공노동관광부 인재확보추진실 075-682-8918
101	모자 · 부자 ·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02	간호사등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의료과 075-414-4746 · 4754
104	개호복지사 등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1
105	보육사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어린이 · 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참고자료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07	아동수당	건강복지부 어린이 · 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109	아동부양수당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10	특별 아동부양수당	
111	장애아 복지수당	건강복지부 장애자지원과 075-414-4606
112	모자복지단체 소액자금대출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13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급부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4
114	편부모가정 고등취업훈련 촉진자금대출	

☆ 이 책자는 자유롭게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교토부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도 취학 및 진학 ·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제도 일람
2022 년 3 월 발행

편집 · 발행 교토부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도부 학교교육과 인권교육실)